

【 6 】 양주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8. 4. 24.

제출자 : 양주군수

□ 제안이유

- 개정된 지방세법이 '97. 10. 1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에 맞추어 양주군군세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조례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세목,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반영코자 함.

□ 주요골자

가. 지방세 총칙에 대하여

-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납세자 권리현장을 제정·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시 교부토록 신설함.(안 제6조)
-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수정 신고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신고 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7조)
-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안 제8조)
- "군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에 세제분과 위원회를 신설하며 위원회 구성 인원은 "15인이상 20인이하"에서 "20인이상 30인 이하"로 변경함(안 제9조)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 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6월 이내"로 확대함(안 제12조 제2항)

- 종전의 “징수유예신청”을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 등의 유예 등을 포함하는 “징수유예 등의 신청”으로 그 적용범위를 규정함. (안 제14조)

나. 주민세에 대하여

- 균등할 주민세 납세의무자를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일정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9조)
- 균등할 주민세에 대한 과세기준일은 8월 1일로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부과토록 신설함(안 제20조)

다. 구관사업등 건축물·사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 경감율을 종전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50”으로 하향 조정함. (안 제31조, 제77조)

라. 자동차세에 대하여

- 자동차세에 대한 납기를 연 2회로 규정하고 납세의무자가 분할 납부 신청 시 4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연세액 일시 납부시 납기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도록 신설함(안 제40조)
- 자동차를 신규·말소 등록 및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한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수시부과·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40조)

마. 사업소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기한에 대하여 종전 “납기 개시일 10일전까지”에서 재산할은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까지”, 종업원할은 “매년 1월 31일 (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까지”로 변경함. (안 제101조)

양주군 조례 제 호

양주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 1 절 통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군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세 법령의 적용) 군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세 목) ①군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세
2. 재산세
3. 자동차세
4. 농지세
5. 담배소비세
6. 도축세
7. 종합토지세

③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세
2. 사업소세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내지

제9조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주군군세부과징수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 2 절 납 세 자 권 리 보 호

제6조(납세자 권리현장의 제정과 교부) 군수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 권리현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정신고) ①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정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37조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군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지방세관련 5급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③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위원회가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⑥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세제분과위원회,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
- ⑤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⑥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절 부 과 징 수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수는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군세의 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군 내부위임규정을 정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세무공무원의수납)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0,000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법령에 규정된 기한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기한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허가 등의 제한) 군수는 영 제25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허가 등의 종목
3. 허가 등을 제한하는 이유

4. 기타 참고사항

제14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에 관하여 징수 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군세는 그 징수금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6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군세의 납부 또는 납입 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일내로 한다.

제17(서류송달의 방법) ①영 제39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양주군리장임명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리장과 양주군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송달부 교부근거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서류 1매당 5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개인균등할(주소지할)은 제외한다.

제18조(공시송달)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 2 장 보 통 세

제 1 절 주 민 세

제19조(납세의무자) ①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 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군내에 영 제130조의2 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제2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

제21조(세율) ①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 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1,000원
- 나.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50,000원

2. 법인

구 분	세율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법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기타 법인	50,000원

② 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2.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3. 농지세할 : 농지세액의 100분의 10

제22조(신고납부) ①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20일(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30일)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년도별로 추가 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 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년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만료일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③법인세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3조(수정신고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내에 이를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할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2 절 재 산 세

제24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건축물, 선박및 항공기 (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군내에 기항지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

제25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권리의 양도 ·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 · 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⑥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조(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7조(세율) 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건축물
 - (1) 주택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000분의 3
1,200만원 초과	3만6천원 + 1,200만원
1,600만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600만원 초과	5만6천원 + 1,600만원
2,200만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2,200만원 초과	11만6천원 + 2,200만원
3,000만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
3,000만원 초과	35만6천원 + 3,000만원
4,000만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4,000만원 초과	85만6천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0

(2) 골프장 · 별장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50

(3) 제1목 내지 제2목 이외의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3

2. 선 박

(1) 고급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2) 제1목 이외의 선박 : 1,000분의 3

3. 항공기

그 가액의 1,000분의 3

②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양주군군세감면조례(이하“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6.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9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1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 무자가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되었을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33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 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선박이 과세선박이 된 때
5. 과세선박이 비과세선박이 된 때

제34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 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항공기를 취득한 때
2. 항공기를 매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항공기가 과세항공기로 된 때
5. 과세항공기가 비과세항공기로 된 때

제35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군수는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절 자 동 차 세

제36조(납세의무자) 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의 세율(자동차1대당 연세액)은 다음과 같다.

1. 승용자동차

배기량에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씨씨당세액	배기량	씨씨당세액
1,000씨씨이하	18 원	800씨씨이하	100 원
1,500씨씨이하	18 원	1,000씨씨이하	120 원
2,000씨씨이하	19 원	1,500씨씨이하	160 원
2,500씨씨이하	19 원	2,000씨씨이하	220 원
2,500씨씨초과	24 원	2,500씨씨이하	250 원
		3,000씨씨이하	310 원
		3,000씨씨초과	370 원

2. 기타 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20,000 원	100,000 원

3.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 원	-
대형전세버스	70,000 원	-
소형전세버스	50,000 원	-
대형일반버스	42,000 원	115,000 원
소형일반버스	25,000 원	65,000 원

4.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적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적량 10,000 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 分	영 업 용	비 영 업 용
1,000킬로그램이하	6,600 원	28,500 원
2,000킬로그램이하	9,600 원	34,500 원
3,000킬로그램이하	13,500 원	48,000 원
4,000킬로그램이하	18,000 원	63,000 원
5,000킬로그램이하	22,500 원	79,500 원
8,000킬로그램이하	36,000 원	130,500 원
10,000킬로그램이하	45,000 원	157,500 원

5. 특수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 分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 원	157,500 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 원	58,500 원

6.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 업 용	비 영 업 용
3,300 원	18,000 원

②제1항 각호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기 분	기 간	납 기
제 1 기 분	1. 1 ~ 6. 30	6. 16 ~ 6. 30
제 2 기 분	7. 1 ~ 12. 31	12. 16 ~ 12. 31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를 신규 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와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③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④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하는 때에 연세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군수는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각각 징수한다.

②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년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 4 절 농 지 세

제41조(납세의무자) ①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하 이 절에서 “농지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자는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③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은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 금액에 따라 각각 농지세의 납부의무를 진다.

④같은 세대내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주된 납세의무자가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제42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지 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3조(개간·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년월일, 사실상준공년월일, 영농개시일, 피해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로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과세기간) ①농지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농지세를 부과한다.

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농지세를 부과한다.

제45조(과세표준) ①농지세의 과세표준은 농지소득금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2이상의 시·군에 있는 농지에서 생기는 농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 소득과 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46조(세율) 농지세의 세액은 과세기간중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 세 표 준)	(세 율)
400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400만원초과	12만원+400만원초과
1,000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16
1,000만원초과	108만원+1,000만원초과
2,500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27
2,500만원초과	513만원+2,500만원초과
5,000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38
5,000만원초과	1,463만원+5,000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 50

제47조(농지의 변동신고등) ① 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번·면적·작물의 종류와 변동사유 발생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지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
 2. 농지의 경작지가 변동된 때
 3. 농지가 농지이외의 토지로 되거나, 농지이외의 토지가 농지로 된 때
 4.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때
- ② 농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군수가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 사실을 즉시 농지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중간예납) ① 영 제162조의 규정에서 “연2회 군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기분 :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 제2기분 :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납기내에 발생한 농지 소득을 근거로 군수가 산출하여 통지한 농지세액을 다음 기간에 중간예납하여야 한다.

1. 제1기분 :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기분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49조(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지세는 중간예납이나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 기간으로 하여 영 제16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50조(확정신고와 자진납부) ①농지세의 납부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지소득금액을 확정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3조 제1항의 신고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농지의 납부의무자는 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항의 기간내에 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14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2. 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3. 법 제21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세액

제51조(농지조사위원회 설치 · 운영 등) ①농지수입금액 · 농지소득금액 기타 농지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읍 · 면에 농지 조사위원회를 둔다.

②농지조사위원회는 군내의 농지소유자 ·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농지조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농지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 5 절 담 배 소 비 세

제52조(과세대상) ①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제조담배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흡연용의 제조담배

- 가. 제1종 퀄련
- 나. 제2종 파이프담배
- 다. 제3종 엽궐련
- 라. 제4종 각련

2. 썹는 제조담배

3. 냄새맡는 제조담배

제53조(납세의무자) 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제조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제조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4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제55조(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연용의 제조담배

- 가. 제1종 퀄련 20개비당 460원. 다만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당)
이하인 퀄련은 20개당 40원
-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910원
- 다.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2,600원
-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910원

2. 썹는 제조담배 50그램당 1,040원

3. 냄새맡는 제조담배 50그램당 650원

②제조담배로서 판매가격이 다음 각 호의 정하는 금액 이하의 제조담배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로 한다.

1. 퀄련 : 20개비당 100원
2. 각련 : 50그램당 100원

제56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계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기타 참고사항

제57조(제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반출·미납세반출 및 비과세 대상 반출을 구분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8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조장 명칭 또는 상호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소재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성명
3. 생산 또는 수입하는 제조담배의 품종 및 주생산 제조담배의 품종
4. 1일평균 생산능력 또는 평균수입량
5. 제조 또는 수입판매 영업개시일자
6. 제조담배 보관창고의 주소 및 위치도면
7. 주민등록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8.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 허가 또는 등록증 사본
9. 기타 참고사항

제59조 (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60조(신고납부등)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군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

를 관할하는 군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를 수입제조담배의 담배 소비세에 대한 군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 181조의 규정에 의한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제조담배의 품종·수량·세율·세액 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61조(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4.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경우. 다만, 신고납부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별 제조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납부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제조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4.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제조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62조(납세담보) ① 군수는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영 제18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군수는 제조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6 절 도 축 세

제63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군내에서 소·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 한다.

제64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군수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②도축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소 : 도살하는 소가격의 1,000분의 10
2. 돼지 : 도살하는 돼지가격의 1,000분의 10

제65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66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소, 돼지를 도축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장 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소, 돼지를 도살할 때마다 부과·징수한다.

②소, 돼지를 도축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7조(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 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 함과 동시에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한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납입하여야 한다.

제68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9조(가산세) 군수는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70조(장부비치의 의무) ①도축장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1. 도살년월일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3. 도축의 종류별 두수와 과세표준액 및 해당 도축세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년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도축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7 절 종 합 토 지 세

제71조(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

제72조(납세의무자) ①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 5에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토지로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수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제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 ③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제73조(과세표준) 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

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영 제 194조의 16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가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며 종합합산과세 표준·별도합산과세 표준 및 분리과세 표준으로 구분한다.

②종합합산과세 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영 제194조의 14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격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
2. 감면조례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
3. 영 제194조의 15 제1항에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
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영 제194조의 15 제2항에서 정하는 임야의 가액
5.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영 제194조의 15 제3항에서 정하는 토지의 가액
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영 제194조의 15 제4항에서 정하는 토지의 가액

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영 제194조의 16 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

제74조(세율) ①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세율>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4만원+2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5천만원 초과	13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억원 이하	1,000분의 5
1억원 초과	38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3억원 이하	1,000분의 7
3억원 초과	178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5억원 이하	1,000분의 10
5억원 초과	378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 이하	1,000분의 15
10억원 초과	1,128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30억원 이하	1,000분의 20
30억원 초과	5,128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50억원 이하	1,000분의 30
50억원 초과	1억1,128만원+5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②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30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억원 이하	1,000분의 4
5억원 초과	19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 이하	1,000분의 5
10억원 초과	44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30억원 이하	1,000분의 6
30억원 초과	1,640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50억원 이하	1,000분의 8
50억원 초과	3,240만원+50억원 초과금액의
100억원 이하	1,000분의 10
100억원 초과	8,240만원+100억원 초과금액의
300억원 이하	1,000분의 12
300억원 초과	3억2,240만원+300억원 초과금액의
500억원 이하	1,000분의 15

500억원 초과 6억2,240만원+5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0

③제73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분리과세대상토지”이라 한다)의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전 · 담 · 과수원 · 목장용지 · 임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
2. 골프장 · 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3. 제1호 내지 제2호 외의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제75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당해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6조(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①법 제266조 제3항에서 “구판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구매 ·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77조(부과 · 징수 등) ①종합토지세는 제7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종합합산세액 및 별도합산세액을 영 제194조의 1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안분 계산한 금액을 군수가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부과 · 징수 한다.

②분리과세대상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직접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 · 징수 한다.

③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가액의 합산 · 세액산정 기타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104조의 16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8조(세액조정) 군수는 과세대상토지의 누락으로 인한 수시부과 사유의 발생, 위법 또는 착오로 인한 부과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종합토지세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 17의 규정에 따라 세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 제79조(신고의무) ①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권 또는 과세대상토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②상속이 개시된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③종중토지로서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종중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종중토지임을 신고 하여야 한다.
- ④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및 방법은 시행규칙 제104조의 18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 ⑥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이내에 수탁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⑦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및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과세토지가 과세토지로 되거나 과세토지가 비과세토지로 된 때
 2.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3.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 ⑧법 제234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0조(공람 및 이의신청) ①군수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조사하여 매년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람 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매각·등기·등록관계서류의 열람등) 세무공무원이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의 매각·등기·등록 기타 토지현황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2조(과세대장 비치) 군수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 3 장 목 적 세

제 1 절 도시계획세

제83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 9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2. 건축물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 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제84조(부과지역의 고시) 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5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물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 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86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 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7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8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종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2. 재개발사업지구
3. 개발예정구획조성사업지구

제89조(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가액(법 제234조의 15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 또는 건축물의 가액(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는 다음과 같다.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기
건축물	매년 5월 1일	매년 6월 16일 ~ 6월 30일
토지	매년 6월 1일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제91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2로 한다.

제92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3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 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4조의 21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4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종합토지세과세대장 등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 절 사 업 소 세

제95조(납세의무자) 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 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계기하는 자는 사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재산할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제96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할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연면적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제97조(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할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2. 종업원할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②영 제2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98조(납기) ①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99조(신고의무) 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충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100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재산할은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 까지로 하고,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之日起 30일) 까지로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 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 및 감면사유
6. 기타 필요한 사항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양주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

【신·구 대 비 표】

신·구조문 대비표

現 行	改 正 案
<p>제 1 장 총 칙</p> <p>제 1 절 총 칙</p> <p>제1조(과세의 근거) 군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 과징수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 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 는 바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무공무원 : 군수 또는 그 위임 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 할 군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 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 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 장소 와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는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 는 착오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 을 기재한 문서로서 군수가 작성 한 것을 말한다. 	<p>제 1 장 총 칙</p> <p>제 1 절 통 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군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지방세 법령의 적용) 군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 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 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제3조(세목) ①군세는 보통세와 목적세 로 한다.	②보통세는 다음과 같다.	1.주민세 2.재산세 3.자동차세 4.농지세 5. <u>도축세</u> 6.담배소비세 7.종합토지세	③목적세는 다음과 같다.	1.도시계획세 2.사업소세
제4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지방 세법(이하“법”이라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 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 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 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 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7조 내지 제9조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 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 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 세법(이하“법”이라한다) 제7조 내지 제9조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 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 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 2 절 부과정수				제 3 절 부과정수
제6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수는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군세의 징수금 징수 기타 특 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군 내부위임규정을 정하여 읍·면장에 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의2(세무공무원의수납)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 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 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 을 제외한다)이 300,000원 이하인 군 세를 말한다.	제10조(부과징수의 위임) 군수는 군 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군세의 징수 기타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군 내부 위임규정을 정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세무공무원의수납)
				(현행과 같음)
제7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제12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연장) ①(현행과 같음)	

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 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 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법령에 규정된 기한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기한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 기한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④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신고납부기간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세는 그 연장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기한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현행과 같음)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p><u>제8조(허가등의 제한)</u> 군수는 영 <u>제27조</u>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와 성명 2. 허가 등의 종목 3. 허가 등을 제한하는 이유 4. 기타 참고사항 	<p><u>제13조(허가등의 제한)</u>군수는 영 <u>제25조</u>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와 성명 또는 명칭 2.~4. (현행과 같음)
--	---

제9조(징수유예신청)군세에 관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징수유예 등의 신청)법 제41 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에 관하여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부과사실 증명서의 제출)군세 의 납세의무가 발생한자의 동일 과세 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 한 때에는 부과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조(탈루된 징수금의 처리)누락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	제15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군세는 그 징수금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2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군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 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기타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 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하다)를 한 날 부터 15일 내로 한다.	제16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군세의 납부 또는 납 입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 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하다)를 한 날 로부터 15일 내로 한다.
제12조의2(서류송달의방법)①영 제39 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양주군리장임명규칙에 의 하여 임명된 리장과 양주군반설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반장을 통 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 달은 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송달부 교부근	제17조(서류송달의 방법) (현행과 같음)

거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서류1매당 5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개인균등할(주소지할)은 제외한다.

제13조(공시송달)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공시송달)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p><u>제14조(군세심의위원회)</u> ① 군세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군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군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의 안건을 분장,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u>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u>. 이 경우 분과위원회 심의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p> <p>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u>15인 이상 20인</u>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p> <p>④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u>2년으로 한다</u>. 다만, 보궐로 선임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p> <p>⑤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⑥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p>	<p><u>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u> ①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u>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지방세심의위원회</u>(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의 안건을 분장,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u>세제분과위원회,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u>. 이 경우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p> <p>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u>20인 이상 30인</u>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위원의 임기는 <u>2년으로 한다</u>. 다만, 보궐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p> <p>⑤ ~ ⑥ (현행과 같음)</p>
---	---

제14조의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 군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5.(신설)

③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또는 기타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 군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지방세관련 5급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 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⑥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제2절 납세자 권리보호

제6조(납세자 권리 헌장의 제정과 교

부) 군수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 권리 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정신고) ①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정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하다)제37조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보 통 세

제 1 절 주 민 세

제19조(납세의무자) ①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군내에 영 제130조의 2 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제2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

<신 설>

<신 설>

제15조(세율) ①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21조(세율) (현행과 같음)

1. 개인

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1,000원

나.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50,000원

2. 법인

구 분	세율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 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 (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법 제24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 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 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 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 원

구 분	세율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 원 초과 5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기타법인	50,000원

② 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2.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3. 농지세할 : 농지세액의 100분의 10

<신설>

②(현행과 같음)

제22조(신고납부) ① 법인세할의 납

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20일(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30일)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년도별로 추가 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년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 법인세 할에 가감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하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만료일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③법인세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신설>

제23조(수정신고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내에 이를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할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2 절 재 산 세

제24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신설>

<신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군내에 기항
지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

제25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는 군내
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
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소유
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하
다.

② 권리의 양도 · 도시계획사업의 시
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자의 권리에 변
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
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
를 진다.

③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
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
무를 진다.

④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
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
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
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
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 · 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 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제16조(삭제 '95.7.26)

제 2 절 재 산 세

제17조(비과세 적용자 신고사항)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개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 지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6.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⑥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양주군군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현행과 같음)

제18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 신고 및 통지)	제29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p>①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p> <p>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익 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①~②(현행과 같음)</p>
제19조(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①법 제266조 제3항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및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아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제30조(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법 제266조 제3항에서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건축물 	<p>1.~4.(현행과 같음)</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p>
제20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제31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현행과 같음)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자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u>제21조(과세표준)</u> ①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u>제26조(과세표준)</u>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u>제21조의2(세율)</u> ①법 제188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재산세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u>제27조(세율)</u> 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p>1. 건축물 (1) 주택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000분의 3 1,200만원 초과 3만6천원 + 1,200만원 1,600만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600만원 초과 5만6천원 + 1,600만원 2,200만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2,200만원 초과 11만6천원 + 2,200만원 3,000만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 3,000만원 초과 35만6천원 + 3,000만원 4,000만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4,000만원 초과 85만6천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0 (2) 골프장 · 별장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50 (3) 제1목 내지 제2목 이외의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3</p>	<p>1.(현행과 같음)</p>
2. 항공기 : 그 가액의 1,000분의 3	<p>2. 선박 (1)고급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 50</p>

	3. 항공기 : 그 가액의 1,000분의 3 ②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세 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②(신설)	
제2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 제2호 제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27조(삭제)
제23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현행과 같음)
1. 건축물을 신축, 중축, 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되었을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 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현행과 같음) ②(삭제)
제24조(삭제 '95.7.26)	
제2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제33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현행과 같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선박이 과세선박이 된 때
5. 과세선박이 비과세선박이 된 때

제2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제34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기를 취득한 때
2. 항공기를 매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항공기가 과세항공기로 된 때
5. 과세항공기가 비과세항공기로 된 때

제27조(재산세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는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절 자 동 차 세

<소 설>

(현행과 같음)

- 1.~5.(현행과 같음)

제35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

세의무자가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는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절 자 동 차 세

제36조(납세의무자) 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8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의 세율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과 같다.

제37조(과세표준액과 세율) ①
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
한다.

1. 승용자동차

배기량에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씨씨당 세액	배기량	씨씨당 세액
1,000씨씨이하	18원	800씨씨이하	100원
1,500씨씨이하	18원	1,000씨씨이하	120원
2,000씨씨이하	19원	1,500씨씨이하	160원
2,500씨씨이하	19원	2,000씨씨이하	220원
2,500씨씨초과	24원	2,500씨씨이하	250원
		3,000씨씨이하	310원
		3,000씨씨초과	370원

2. 기타 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
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3.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
로 한다.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4.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
로 한다. 다만, 적재적량 10,000킬로그램
초과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
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
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
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1,000킬로그램이하	6,600원	28,500원
2,000킬로그램이하	9,600원	34,500원
3,000킬로그램이하	13,500원	48,000원
4,000킬로그램이하	18,000원	63,000원
5,000킬로그램이하	22,500원	79,500원
8,000킬로그램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킬로그램이하	45,000원	157,500원

5. 특수자동차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	58,500원

6.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② 제1항 각 호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 (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②(현행과 같음)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 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기 분	기 간	납 기
제1기분	1.1 ~ 6.30	6.16 ~ 6.30
제2기분	7.1 ~ 12.31	12.16 ~ 12.31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납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를 신규 등록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와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④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하는 때에 연세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신 설>

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 계산)

①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군수는 취득
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 세액을 일
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
여 각각 징수한다.

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계산한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신 설>

제40조(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제

3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일할계
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
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를 곱
한 금액을 당해년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제 4 절 농지세

제41조(납세의무자) ①농지에서 농

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하 이 절에서 “농지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자는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순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③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은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농지세의 납부 의무를 진다.

④ 같은 세대내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주된 납세의무자가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제29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지 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 발생일부터

제42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현행과 같음)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개간·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년월일, 사실상 준공년월일, 영농개시일, 피해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가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신청) <삭 제>

법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피해연월일, 피해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삭 제'95.7.26)

제33조(감면결정통지) 군수는 제29조 <삭 제>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시행규칙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과세기간) ① 농지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1년간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농지세를 부과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농지세를 부과한다.

<신 설>

제45조(과세표준) ① 농지세의 과세표준은 농지소득금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2이상의 시·군에 있는 농지에서 생기는 농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 설>

제46조(세율) 농지세의 세액은 과세기간중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400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400만원초과 12만원+400만원초과

1,000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16

1,000만원초과 108만원+1,000만원초과

2,500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27

2,500만원초과 513만원+2,500만원초과

5,000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38

5,000만원초과 1,463만원+5,000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 50

제34조(농지의 변동신고등) ①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번·면적·작물의 종류와 변동사유 발생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농지의 변동신고등) (현행과 같음)
1. 농지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 2. 농지의 경작지가 변동된 때 3. 농지가 농지이외의 토지로 되거나 농지이외의 토지가 농지로 된 때 4.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때	1.~4.(현행과 같음)
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군수가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의 대리 신고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지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군수가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의 대리 신고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지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중간예산) ①영 제162조의 규정에서 “연2회 군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8조(중간예납) (현행과 같음)
1. 제1기분 :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 제2기분 :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서 규정한 납기내에 발생한 농지소득을 근거로 군수가 산출하여	

통지한 농지세액을 다음 기간에 종간예납하여야 한다.

1. 제1기분 : 8월 16일부터 8월 31일 까지
2. 제2기분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제36조(수시부과) 법 제217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부과하는 농지세는 중간예납이나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제37조(농지조사위원회 설치, 운영 등)

- ① 농지수입금액, 농지소득금액 기타 농지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읍·면에 농지조사위원회를 둔다.
- ② 농지조사위원회는 군내의 농지소유자,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 ③ 농지조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④ (신설)

제49조(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지세는 중간예납이나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6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51조(농지조사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농지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기타 서비스를 지급 할 수 있다.

<p><u>제38조(농지조사위원회의 수당과 여비)</u> <u>비) 농지조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양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95.7.26) 2. (삭제'95.7.26) 	<p><u><삭 제></u></p>
<p><u><신 설></u></p>	<p><u>제50조(확정신고와 자진납부)</u> ① 농지세의 납부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지소득금액을 확정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3조제1항의 신고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농지의 납부의무자는 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항의 기간내에 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14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2. 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3. 법 제21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세액
<p><u>제 5 절 도 축 세</u> <u><신 설></u></p> <p><u>제39조(과세표준)</u> ①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기는 군수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p>	<p><u>제 6 절 도 축 세</u> <u>제63조(납세의무자)</u> 도축세는 군내에서 소·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p> <p><u>제64조(과세표준 및 세율)</u> ①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기는 군수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p>

<u>제40조(세율)</u> 도축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② 도축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소 : 도살하는 소가격의 1,000분의 10 2. 돼지 : 도살하는 돼지가격의 1,000분의 10
	1.~2.(현행과 같음)
<u>제41조(징수방법)</u> 도축세는 특별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u>제65조(징수방법)</u> (현행과 같음)
<u>제42조(특별징수의무자의지정)</u> ① 소, 돼지를 도축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소, 돼지를 도살할 때마다 부과, 징수한다.	<u>제66조(특별징수의무자의지정)</u> (현행과 같음)
② 소, 돼지를 도축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을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u>제43조(신고납입)</u>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 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u>제67조(신고납입)</u> (현행과 같음)

다만, 도축장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한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납입하여야 한다.

제44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가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가산세액) 군수는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도축세액으로 하고 그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한다.

제46조(장부비치의 의무) ① 도축장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8조(세액의 결정과 경정등)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69조(가산세) 군수는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70조(장부비치의 의무) ① 도축장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1. 도살년월일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3. 도축의 종류별 두수와 과세표준액 및 해당 도축세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 년월일 5. 기타 참고사항	1.~5. (현행과 같음)
<p>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p> <p>③도축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p>	②~③ (현행과 같음)
제 6 절 담 배 소 비 세 <u><신설></u>	제 5 절 담 배 소 비 세 <u>제52조(과세대상)</u> ①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제조담배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흡연용의 제조담배

가. 제1종 퀼련

나. 제2종 파이프담배

다. 제3종 엽궐련

라. 제4종 각련

<p><u><신 설></u></p>	<p>2. 썹는 제조담배 3. 냄새맡는 제조담배</p> <p><u>제53조(납세의무자)</u> 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p> <p>②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p> <p>③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제조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p> <p>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제조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p>
<p><u><신 설></u></p>	<p><u>제54조(과세표준)</u>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p>
<p><u><신 설></u></p>	<p><u>제55조(세율)</u>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흡연용의 제조담배</p> <p>가. 제1종 컬련 20개비당 460원. 다만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당)이하인 컬련은 20개당 40원</p> <p>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910원</p> <p>다. 제3종 업컬련 50그램당 2,600원</p> <p>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910원</p>

2. 썹는 제조담배 50그램당 1,040원
3. 냄새맡는 제조담배 50그램당 650원

②제조담배로서 판매가격이 다음 각호의 정하는 금액 이하의 제조 담배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로 한다.

1. 컬련 : 20개비당 100원
2. 각련 : 50그램당 100원

제47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기타 참고사항

<신 설>

제56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현행과 같음)

1. ~3.(현행과 같음)

제57조(제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반출·미납세반출 및 비과세 대상 반출을 구분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58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제조
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제
조장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장 소
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군수
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
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
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조장 명칭 또는 상호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소재
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
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
성명
3. 생산 또는 수입하는 제조담배의 품
종 및 주생산 제조담배의 품종
4. 1일평균 생산능력 또는 평균
수입량
5. 제조 또는 수입판매 영업개시일자
6. 제조담배 보관창고의 주소 및 위
치도면
7. 주민등록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8.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 허가
또는 등록증 사본
9. 기타 참고사항

제48조(기장의무)제조자 또는 수입판
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 수입,
매도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
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9조(기장의무)제조자 또는 수입판
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 · 수입 ·
매도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
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제60조(신고납부등)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
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기준
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
지 군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
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 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를 수입제조납배의 담배 소비세에 대한 군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제조납배의 품종·수량·세율·세액 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제61조(가산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4.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경우. 다만, 신고납부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별 제조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납부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제조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 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4.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제조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신 설>

제62조(납세담보) ① 군수는 담배소

비서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영제183
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
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
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
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
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군수는 제조담배의 반출을 금지하
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
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p><u><신설></u></p> <p><u><신설></u></p>	<p>제 7 절 종합 토지 세</p> <p><u>제71조(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 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u></p> <p><u>제72조(납세의무자) ①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 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u></p> <p><u>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 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 5에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종 토지로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종종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	--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체조합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
지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
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신
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
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 및 도
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
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 등이 정
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
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
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제73조(과세표준) ①종합토지세의 과
세표준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
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경우
에는 군수가 동법 제10 조의 규정
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
한 토지가격비준표

<신설>

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영 제194조의16 제2항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가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며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영 제194조의 14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격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임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
2. 임면조례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격
3. 영 제194조의15 제1항에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
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종소유 임야로서 영 제194조의15 제2항에서 정하는 임야의 가액
5.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영
제194조의15 제3항에서 정하는 토
지의 가액

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
세를 분리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영 제194조의
15 제4항에서 정하는 토지의 가액
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
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
속토지중 영 제194조의16 제1항에
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
만,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
하지 아니한다.

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

제74조(세율) ①제72조 제2항의 규정
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종합합산세
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신설>

<u><신설></u>	<u><과세표준></u>	<u><세율></u>
	2천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천만원초과 4만원+2천만원초과금액의 5천만원이하 1,000분의 3	
	5천만원초과 13만원+5천만원초과금액의 1억원이하 1,000분의 5	
	1억원초과 38만원+1억원초과금액의 3억원이하 1,000분의 7	
	3억원초과 178만원+3억원초과금액의 5억원이하 1,000분의 10	
	5억원초과 378만원+5억원초과금액의 10억원이하 1,000분의 15	
	10억원초과 1,128만원+10억원초과금액의 30억원이하 1,000분의 20	
	30억원초과 5,128만원+30억원초과금액의 50억원이하 1,000분의 30	
	50억원초과 1억1,128만원+50억원초과금 액의 1,000분의 50	
	②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u><과세표준></u>	<u><세율></u>	
	1억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30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억원이하 1,000분의 4	
	5억원초과 19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이하 1,000분의 5	
	10억원초과 44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30억원이하 1,000분의 6	
	30억원초과 1,640만원+30억원초과금액의 50억원이하 1,000분의 8	
	50억원초과 3,240만원+50억원초과금액의 100억원이하 1,000분의 10	

<신설>

100억원초과 8,240만원+100억원초과금액의
300억원이하 1,000분의 12
300억원초과 3억2,240만원+300억원초과금
500억원이하 액의 1,000분의15
500억원초과 6억2,240만원+500억원 초과금
액의1,000분의 20

③제73조제2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 (이하“분리
과세대상토지”이라 한다)의 종합
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
용한다.

- | | | |
|--------------|------------------------|------------|
| 1.전·답·과수원 | 과세표준액의
·목장용지·임야 | 1,000분의 1 |
| 2.골프장·별장 기타 | 과세표준액의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 | 1,000분의 50 |
| 3.제1호 내지 제2호 | 과세표준액의
외의 토지 | 1,000분의 3 |

제75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종합토
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
로 하고 납기는 당해연도 10월16
일부터 10월31일까지로 한다.

제76조(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경감) ①
법 제266조 제3항에서“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다.

<신설>

제 7 절 종 합 토 지 세

제49조(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①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용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
사업용 토지
3.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
- 1.~4. (현행과 같음)

4. 농어민 교육 시설용 토지

②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신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77조(부과·징수 등) ①종합토지세

는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종합합산세액 및 별도합산세액을 영 제194조의 1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1분 계산한 금액을 군수가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②분리과세대상토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는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직접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③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가액의 합산·세액산정 기타 부과절 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104조의16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제50조(토지에 대한 신고 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과세 토지가 과세토지로 되거나 과세토지가 비과세 토지로 된 때
 2.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 이 증감된 때
 3. 토지를 양수 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 한 때
- ② 법 제234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받고 자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기타 비과세 대상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⑧(신설)

제78조(세액조정) 군수는 과세대상 토지의 누락으로 인한 수시부과 사유의 발생, 위법 또는 차오로 인한 부과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종합토지세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 17의 규정에 따라 세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79조(신고의무)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권 또는 과세대상 토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 3.(삭 제)

②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군수에게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종종토지로서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종종 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종종토지 임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및 방법은 시행규칙 제104조의 18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 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⑥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수탁자는 과세 기준일부터 10이내에 수탁 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및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과세토지가 과세토지로 되거나 과세토지가 비과세 토지로 된 때

2.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 이 증감된 때

3.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⑧ 법 제234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받고 자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 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신설>

제80조(공람 및 이의신청) ①군수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조사하여 매년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제81조(매각·등기·등록관계서류의 열람등) 세무공무원이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의 매각·등기·등록 기타 토지현황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제82조(과세대장비치)군수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p>제 3 장 목 적 세</p> <p>제 1 절 도 시 계획 세</p> <p><u>제51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도시계획 구역안의 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부과한다.</u></p> <p><u>제52조(부과지역의고시) ① 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u></p> <p><u>② 군수가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u></p> <p><u>제53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는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u></p>	<p>제 3 장 목 적 세</p> <p>제 1 절 도 시 계획 세</p> <p><u>제83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 <u>토지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 9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u> 2. 건축물 <u>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u> <p><u>제84조(부과지역의고시) 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p> <p><u>제85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	--

4.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
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
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
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
작한 시기]

제54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
고 및 통지) ①법 제238조의 2법
제279조, 법 제290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을 사유가 없
게 되었을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53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
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
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군수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
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
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
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을 정리하
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86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
신고 등)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자가 도시계획세
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
물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
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
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
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
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 과
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 신고하거나 군수가 납세관리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신고로 갈음한다.	제87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6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장 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 안의 토지로서 법 동조 동항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제88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장 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 안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2. 재개발사업지구 3. 개발예정구획조성사업지구	1.~3.(현행과 같음)

<신설>

제89조(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 표준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가액(법 제234조의15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 또는 건축물의 가액(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신설>

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도시계획 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는 다음과 같다.

과세 대상	과세기준일	납기
건축물	매년5월1일	매년 6월16일 ~ 6월30일
토지	매년6월1일	매년 10월16일 ~ 10월31

제57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2로 한다.

제58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9조(신고의무 및 직권등재)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였거나, 과세대상의 정황이 변경된 때의 신고의무에 관하여는 제23조 및 법 제234조의 21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직권등재는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91조(세율)(현행과 같음)

제92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현행과 같음)

제93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충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할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 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충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 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납세의무자가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④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년 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4조의 21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제94조(과세대장에 의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재산세 과세대
장 또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등
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
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 절 사업소세
<신설>

제 2 절 사업소세
제95조(납세의무자) 군내에 사업소

(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하다)를 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개기하는 자는 사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재산할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과세 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신설>

제96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 표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산할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연면적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제60조(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로 한다.

1. 재산할 : 사업소연면적 1제곱미터 당 250원

2. 종업원할 : 종업원 급여 총액의 100분의 0.5

②법 제2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61조(삭제'95.7.26)

<신설>

제97조(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2. (현행과 같음)

②영 제2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98조(납기) ①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신고

	<u>납부하여야 한다.</u>
	②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 할 세액을 7월1일부터 7월10일까 지를 납기로하여 군수에게 신고납 부하여야 한다.
제62조(신고의무) ① 사업소세의 납세 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 유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총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9조(신고의무)(현행과 같음)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장 건축물이 과세대장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장 건축물이 비과세대장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1.~2.(현행과 같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7.(현행과 같음)
제63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개시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00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 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재산할 은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까지로

	<p><u>하고,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u></p> <p>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 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 및 감면사유 6. 기타 필요한 사항</p> <p><u>제64조(과세대상 지역)</u></p> <p><u>영 제205조 제1항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u></p> <p>1. 회천읍 전지역 2. 주내면 전지역, 은현면 전지역, 남면 전지역, 광적면 전지역, 백석면 전지역, 장흥면 전지역</p>
--	--

'세계속에 우뚝솟은 우리 경기도'

경 기 도

송신자	10-04
접수번호	49

우) 441-70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3가 1번지 / ☎ (033) 249-4153 / 담당자 최명환

문서번호 세정 13400 - 16

시행일자 1998. 1. . (년)

(경유)

받음 받는곳 참조

참조

제목 지방세 일반조례 표준안 시달

선행		→ 6	지 시
접	일자 시간	1998. 1. 5	결
수	번호	13 (2)	재
처리 과			공
담당자	이(능수)		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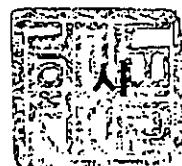
기증

- 내무부 세제 13400-392 ('97. 12. 4)호와 관련입니다.
- 위호와 관련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맞추어 정리한 '지방세 일반조례 표준안'을 별첨과 같이 승부하니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되
- 이 조례(안)은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 조례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과 개정된 지방세 법령의 위임사항을 개략적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시·군별로 추가 또는 삭제하여야 할 부분이 있고 표준세율은 실제로 적용할 세율을 명시해야 하므로 시·군에서는 표준안을 토대로 실정에 맞게 조정한 후 시행하기 바랍니다.
- 아울러 '97. 12. 31자로 개정된 경기도도세조례와 경기도도세감면조례를 같이 승부하오니 업무추진에 차질없기 바랍니다.

덧붙임 : 1. 시군세조례(안) 1부 (천리안으로 승부)

2. 경기도도세조례, 경기도도세감면조례(천리안으로 승부) 각 1부, 22.

경 기 도 지



세정과장 전결

받는곳 : 러 [세정(세무, 재무, 부과, 징수)과장]

○○시(군)세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절 통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세 법령의 적용) 시(군)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세 목) ①시(군)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세
2. 재산세
3. 자동차세
4. 농지세
5. 담배소비세
6. 도축세
7. 종합토지세

③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세
2. 사업소세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내지 제9조 규정에 의한 시(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세부과징수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2절 납 세 자 권리보호

제6조(납세자 권리현장의 제정과 교부) 시장(군수)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 권리현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정신고) ①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정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37조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 시(군)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군)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관련 5급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이 지명 또

는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③적부심사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⑥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세제분과위원회,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시(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절 부 과 장 수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장(군수)은 시(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시(군)세의 징수금 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시(군)내부위임 규정을 정하여 읍·면·동장(구청장 또는 시와 군의 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세무공무원의수납)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그 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도서지역·접적지역인 읍·면·동을 말한다.

②시행규칙 제7조의2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 원 이하인 시(군)세를 말한다.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법령에 규정된 기한내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기한내에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군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허가 등의 제한) 시장(군수)이 영 제25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

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허가 등의 종목
3. 허가 등을 제한하는 이유
4. 기타 참고사항

제14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세에 관하여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시(군)세는 그 징수금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6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시(군)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일내로 한다.

제17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 2 장 보 통 세

제 1 절 주 민 세

제18조(납세의무자) ①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군)내에 영 제130조의2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제19조(과세기준일과 납기)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

제20조(세율) ①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

가.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원

나. 시(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원

2. 법인

구 분	세 율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 (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원 (법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 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 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 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 원
기타법인	○○ 원

② 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
2. 법인세할: 법인세액의 100분의 ○○
3. 농지세할: 농지세액의 100분의 ○○

제21조(신고납부) ①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20일(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30일)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년도별로 추가 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년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만료일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③법인세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 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2조(수정신고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내에 이를 수정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할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2 절 재 산 세

제23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시(군)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시(군)내에 기항지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시(군)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과세대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⑥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5조(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6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 제2호제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 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 지역을 말 한다.

제27조(세율) 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건축물

(1) 주택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000분의 3
1,200만원 초과	3만6천원 + 1,200만원
1,600만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600만원 초과	5만6천원 + 1,600만원
2,200만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2,200만원 초과	11만6천원 + 2,200만원
3,000만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
3,000만원 초과	35만6천원 + 3,000만원
4,000만원 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4,000만원 초과	85만6천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0

※ 표준세율이므로 당해 자치단체가 달리 정하는 경우는 세율을 수정

(2)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50

(3)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6

※ 당해 시군이 적용대상 도시인지를 판단하여 불필요한 시군은 삭제

(4) 제1목 내지 제3목 이외의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3

2. 선박

(1) 고급선박

그 가액의 1,000분의 50

(2) 제1목 이외의 선박

그 가액의 1,000분의 3

3. 항공기

그 가액의 1,00분의 3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제1항제1호제4목에 규정한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 당해 시군이 대도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삭제

③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시(군)세 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6.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9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로 한다.

제31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군수)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되었을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33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선박이 과세선박이 된 때

5. 과세선박이 비과세선박이 된 때

제34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기를 취득한 때

2. 항공기를 매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항공기가 과세항공기로 된 때

5. 과세항공기가 비과세항공기로 된 때

제35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은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절 자·동·차·세

제36조(납세의무자) 시(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대도시에서는 50% 범위안에서 가산적용이 가능하므로 수정가능

1. 승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씨씨당세액	배기량	씨씨당세액
1,000씨씨이하	18 원	800씨씨이하	100 원
1,500씨씨이하	18 원	1,000씨씨이하	120 원
2,000씨씨이하	19 원	1,500씨씨이하	160 원
2,500씨씨이하	19 원	2,000씨씨이하	220 원
2,500씨씨초과	24 원	2,500씨씨이하	250 원
		3,000씨씨이하	310 원
		3,000씨씨초과	370 원

2. 기타 승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20,000 원	100,000 원

3. 승합자동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 원	-
대형전세버스	70,000 원	-
소형전세버스	50,000 원	-
대형일반버스	42,000 원	115,000 원
소형일반버스	25,000 원	65,000 원

4.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적량 10,000
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
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1,000킬로그램이하	6,600 원	28,500 원
2,000킬로그램이하	9,600 원	34,500 원
3,000킬로그램이하	13,500 원	48,000 원
4,000킬로그램이하	18,000 원	63,000 원
5,000킬로그램이하	22,500 원	79,500 원
8,000킬로그램이하	36,000 원	130,500 원
10,000킬로그램이하	45,000 원	157,500 원

5. 특수자동차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버스	36,000 원	157,500 원
소형특수버스	13,500 원	58,500 원

6.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3,300 원	18,000 원

② 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기분	기간	납기
제1기분	1. 1 ~ 6. 30	6. 16 ~ 6. 30
제2기분	7. 1 ~ 12. 31	12. 16 ~ 12. 31

② 시장(군수)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를 신규 등록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와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④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하는 때에 연세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은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각각 징수한다.

②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년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 4 절 농 지 세

제41조(납세의무자) ①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하 이 절에서 “농지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자는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③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은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농지세의 납부의무를 진다.

④같은 세대내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주된 납세의무자가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제42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지 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3조(개간·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년월일, 사실상준공년월일, 영농개시일, 피해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로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과세기간) ①농지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지 소득에 대하여 농지세를 부과한다.

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농지세를 부과한다.

제45조(과세표준) ①농지세의 과세표준은 농지소득금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2이상의 시(군)에 있는 농지에서 생기는 농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46조(세율) 농지세의 세액은 과세기간중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 세 표 준)

(세 율)

400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400만원초과	12만원+400만원초과
1,000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16
1,000만원초과	108만원+1,000만원초과
2,500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27

2,500만원초과	513만원+2,500만원초과
5,000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38
5,000만원초과	1,463만원+5,000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 50

제47조(농지의 변동신고등) ①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번·면적·작물의 종류와 변동사유 발생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지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
 2. 농지의 경작지가 변동된 때
 3. 농지가 농지이외의 토지로 되거나, 농지이외의 토지가 농지로 된 때
 4.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때
- 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장(군수)이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의 대리 신고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 사실을 즉시 농지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중간예납) ①영 제162조의 규정에서 "연 2회 시·군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기분 :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 제2기분 :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납기내에 발생한 농지소득을 근거로 시장(군수)이 산출하여 통지한 농지세액을 다음 기간에 중간예납하여야 한다.

1. 제1기분 :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기분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49조(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지세는 중간예납이나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6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50조(확정신고와 자진납부) ①농지세의 납부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지소득금액을 확정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3조제1항의 신고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농지의 납부의무자는 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항의 기간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14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2. 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3. 법 제21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세액

제51조(농지조사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농지수입금액·농지소득금액 기타 농지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군)에 농지조사위원회를 둔다.
 ②농지조사위원회는 시(군)내의 농지소유자·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농지조사위원회는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농지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 5 절 담 배 소 비 세

제52조(과세대상) ①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제조담배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흡연용의 제조담배
 - 가. 제1종 퀘런
 - 나. 제2종 파이프담배
 - 다. 제3종 엽궐련
 - 라. 제4종 각련
2. 씹는 제조담배
3. 냄새맡는 제조담배

제53조(납세의무자) 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 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제조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제조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4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제55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른 각호와 같다.

1. 흡연용의 제조담배

가. 제1종 퀄련 20개비당 460원. 다만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당)
이하인 퀄련은 20개당 40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910원

다.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2,600원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910원

2. 씹는 제조담배 50그램당 1,040원

3. 냄새맡는 제조담배 50그램당 650원

② 제조담배로서 판매가격이 다음 각호의 정하는 금액 이하의 제조담배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로 한다.

1. 퀄련 : 20개비당 100원

2. 각련 : 50그램당 100원

제56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기타 참고사항

제57조(제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반출·미납세반출 및 비과세

대상 반출을 구분하여 사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8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조장 명칭 또는 상호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소재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성명
3. 생산 또는 수입하는 제조담배의 품종 및 주생산 제조담배의 품종
4. 1일평균 생산능력 또는 평균수입량
5. 제조 또는 수입판매 영업개시일자
6. 제조담배 보관창고의 주소 및 위치도면
7. 주민등록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8.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 허가 또는 등록증 사본
9. 기타 참고사항

제59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60조(신고납부등)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각 시(군)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을 수입제조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각 시(군)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각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제조담배의 품종·수량·세율·세액 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61조(가산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4.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경우. 다만, 신고납부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별 제조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납부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제조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4.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제조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제62조(납세담보) ① 시장(군수)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영

제18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시장(군수)는 제조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6 절 도 축 세

제63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시(군)내에서 소·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64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시장(군수)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② 도축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소 : 도살하는 소가격의 1,000분의 ○○
2. 돼지 : 도살하는 돼지가격의 1,000분의 ○○

제65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66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 소·돼지를 도축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소·돼지를 도살하는 때마다 부과·징수한다.

② 소·돼지를 도축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시장(군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7조(신고납입)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징수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납입하여야 한다.

제68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군수)은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9조(가산세) 시장(군수)은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70조(장부비치의 의무) ① 도축장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1. 도살년월일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3. 도축의 종류별 두수와 과세표준액 및 해당 도축세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년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② 시장(군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축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7 절 총 합 토 지 세

제71조(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

제72조(납세의무자) ①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5에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종토지로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종종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신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제73조(과세표준) 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경우

에는 시장(군수)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영 제194조의16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며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 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영 제194조의14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격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
2. 감면조례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격
3. 영 제194조의15제1항에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
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종소유 임야로서 영 제194조의15제2항에서 정하는 임야의 가액
5.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영 제194조의15제3항에서 정하는 토지의 가액
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영 제194조의15 제4항에서 정하는 토지의 가액

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영 제194조의16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

제74조(세율) ①제7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2천만원 이하

<세율>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천만원 초과	4만원+2천만원 초과금액의
5천만원 이하	1,000분의 3
5천만원 초과	13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억원 이하	1,000분의 5
1억원 초과	38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3억원 이하	1,000분의 7
3억원 초과	178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5억원 이하	1,000분의 10
5억원 초과	378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 이하	1,000분의 15
10억원 초과	1,128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30억원 이하	1,000분의 20
30억원 초과	5,128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50억원 이하	1,000분의 30
50억원 초과	1억1,128만원+5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②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30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억원 이하	1,000분의 4
5억원 초과	19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 이하	1,000분의 5
10억원 초과	44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30억원 이하	1,000분의 6
30억원 초과	1,640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50억원 이하	1,000분의 8
50억원 초과	3,240만원+50억원 초과금액의
100억원 이하	1,000분의 10

100억원 초과	8,240만원+100억원 초과금액의
300억원 이하	1,000분의 12
300억원 초과	3억2,240만원+300억원 초과금액의
500억원 이하	1,000분의 15
500억원 초과	6억2,240만원+5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0

③제73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분리과세대상토지”이라 한다)의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전 · 담 · 과수원 · 목장용지 · 임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
2. 골프장 · 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3. 제1호 내지 제2호 외의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제75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당해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6조(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구매 ·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로 한다.

제77조(부과 · 징수 등) ①종합토지세는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종합합산세액 및 별도합산세액을 영 제194조의1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안분 계산한 금액을 시장(군수)이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 · 징수 한다.

②분리과세대상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이 직접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 · 징수한다.

③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가액의 합산·세액산정 기타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104조의16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8조(세액조정) 시장(군수)은 과세대상토지의 누락으로 인한 수시부과 사유의 발생, 위법 또는 착오로 인한 부과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종합토지세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17의 규정에 따라 세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79조(신고의무) ①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권 또는 과세대상토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종중토지로서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종중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종중토지임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및 방법은 시행규칙 제104조의18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⑥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수탁자는 과세 기준일부터 10이내에 수탁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및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과세토지가 과세토지로 되거나 과세토지가 비과세토지로 된 때
2.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3.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소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⑧법 제234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공람 및 이의신청) ① 시장(군수)은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조사하여 매년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매각 · 등기 · 등록관계서류의 열람등) 세무공무원이 종합토지세의 부과 · 징수에 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의 매각 · 등기 · 등록 기타 토지현황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2조(과세대장 비치) 시장(군수)은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 3 장 목 적 세

제 1 절 도시계획세

제83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2. 건축물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제84조(부과지역의 고시) 시장(군수)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5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 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86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자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자체 없이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 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7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군수)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자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8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2. 재개발사업지구
3. 개발예정구획조성사업지구

제89조(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가액(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 또는 건축물의 가액(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는 다음과 같다.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기
건축물	매년 5월 1일	매년 6월 16일 ~ 6월 30일
토지	매년 6월 1일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제91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로 한다.

제92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3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 ② 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납세의무자가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④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

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년 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4 조의 21의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4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종합토지세과세대장 등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 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 절 사 업 소 세

제95조(납세의무자) 시(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는 사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재산할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제96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할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연면적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제97조(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할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원

2. 종업원할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

② 영 제211조의2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98조(납기) ① 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99조(신고의무) 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100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재산할은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 까지로 하고,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 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 및 감면사유
6. 기타 필요한 사항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關係法令】

第1章 總則 第12節 納稅者의 權利保護 第65條

<p>第66條 削除 (97. 8. 30 改正) (舊法)第66條【大統領令에의 委任】 이 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73. 3. 12 改正)</p> <p>第12節 削除 (97. 8. 30 改正) (舊法) 第 12 節 罰 則</p> <p>第67條 削除 (97. 8. 30 改正) ★ 編者註 : 제84조에 이관 (舊法)第67條【地方稅에 관한 犯則行爲에 대한 租稅犯處罰法準用】 ① 地方稅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 하여는 租稅犯處罰法令을 준용한다. (73. 3. 12 改正) ② 第1項의 범칙행위의 처벌에 있어서는 租稅犯 處罰節次法令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租稅 犯處罰節次法令 중 國稅廳·地方國稅廳 또는 稅 務署는 特別市·道·廣城市 또는 區·市·郡으 로, 國稅廳長·地方國稅廳長 또는 稅務署長은 特 別市長·道知事·廣城市長 또는 區廳長·市長· 郡守로 한다. (81. 12. 31 改正)(95. 12. 6 改正)</p> <p>第12節 納稅者의 權利保護 (97. 8. 30 本節新設) ★ 編者註 : 제12절 모두 97. 8. 30 신설되고 97. 10. 1부터 시행</p>	<p>給金으로서 10원 미만의 端數가 있을 때에는 그 端數는 計算하지 아니한다. 金額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金額을 計算하지 아니한다. ② 收入金 또는 支給金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p> <p>第2條【課稅標準額의 端數計算】 國稅의 課稅標 準額의 算定에 있어 1원 미만의 端數가 있을 때에 는 이를 計算하지 아니한다.</p> <p>第3條【分割收入金과 分割支給金】 分割하여 檢 入하거나 支給하는 金額은 그 總額에 對하여 第1 條의 規定을 準用하고 그 分割金額이 10원 미만 일 때 또는 10원 미만의 端數가 있을 때에는 그 分割金額 또는 端數는 最初의 收入金 또는 支給金 에 合算한다.</p>	<p>第10節 納稅者의 權利保護 (97. 10. 1 本節신설)</p>
--	---	--

第65條(納稅者權利憲章의 制定 및 교부)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66條 내지 第69條에 規定한 사항 기타 納稅者의 權利保護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紳稅者權利憲章을 制定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② 稅務公務員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纳稅者權利憲章의 내용이 收錄된 文書를 纳稅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租稅犯處罰節次法의 規定에 의한 犯則事件에 대한 調査를 하는 경우
2. 地方稅의 賦課·徵收에 필요한 調査(이하 “稅務調查”라 한다)를 하는 경우
3. 기타 纳稅者의 權利保護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第66條(稅務調查에 있어서 助力を 받을 權利) 纳稅者는 地方稅 犯則事件의 調査 및 稅務調查를 받는 경우에 辯護士·公認會計士·稅務士 또는 租稅에 관하여 專門知識를 갖춘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로 하여금 調査에 立會하거나 의견을陳述하게 할 수 있다.

第67條(納稅者의 誠實性 推定등) ① 稅務公務員은 다음 각號의 1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纳稅者가 誠實하며, 제출한 書類등이 真實한 것으로 推定하여야 한다.

1. 纳稅者가 이 法이 정하는 申告등의 纳稅協力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纳稅者에 대한 구체적인 脱稅提報가 있는 경우
3. 第1號 및 第2號와 유사한 경우로서 大統領令

第50條【稅務調查에 있어서의 조력자】 法 第66條에서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경영지도사에 한한다)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97. 10. 1 新設)

第51條【納稅者 성실성 추정의 배제사유】 法 第67條 第1項 第3號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7. 10. 1 新設)

1.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하는 신고납부,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第71條(修正申告) ① 이 法에 의한 申告納付期限내에 地方稅를 申告納付한 者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大統領령이 정하는 날부터 60日이내에 修正申告를 할 수 있다.

1. 申告納付한 후에 課稅標準額 및 稅額計算의 근거가 되는 面積·價額등이 工事費의 精算, 建設資金의 利子計算, 確定判決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申告納付 당시에 있어서 證憑書類의 押收 또는 法人的 清算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課稅標準額 및 稅額을 정확하게 計算할 수 없었으나

第53條【修正申告】 ① 法 第71條 第1項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97. 10. 1 新設)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터 15일(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이내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1호의 2서식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7. 10. 4 新設)

1.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택하는 결정
2.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결정
3. 제1항의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경우 기타 심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 ⑤ 이 規則에서 정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97. 10. 4 新設)

第37條【수정신고납부절차 등】 ① 法 第71條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납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초에 신고납부한 시·군에 별지 제41호의 3 서식에 의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7. 10. 4 新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수정신고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97. 10. 4 新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가 과오납부세액의 환부를 요구하는 신고로서 과오납부세액이 있는 때에는 수정신고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부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과오납부세액이 없

<p>그 후 당해 사유가 削減한 경우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修正申告로 인하여 追加納付稅額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修正申告를 한 者는 修正申告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超過納付稅額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過少申告納付로 인한 加算稅와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還付利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修正申告納付節次 등 필요한 사항은 内務部令으로 정한다.</p> <p>第13節 異議申請 등 (97. 8. 30 本節新設) ★ 編者註 : 제13절 모두 97. 8. 30 신설되고 97. 10. 1부터 시행</p> <p>第72條(請求對象) ① 이 法에 의한 처분(申告納付 또는 修正申告納付를 한 경우에는 그 申告納付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서 違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權利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者는 이 節의 規定에 의한 異异议申請 및 審查請求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號의 처분은 第1項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節의 規定에 의한 異异议申請 또는 審查請求에 대한 처분, 다만 異异议申請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審查請求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가능하게 된 날</p> <p>→ 編者註 : 본절 제58조에서 이관</p>	<p>는 때에는 과오납부세액이 없다는 뜻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7.10. 4 新設)</p>
--	---	---

第1章 總則 第13節 異議申請等 第77條

1. 申請 · 請求期間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補正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申請 · 請求를 却下하는 決定
2. 異議申請 또는 審查請求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申請 · 請求를 棄却하는 決定
3. 異議申請 또는 審查請求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申請 · 請求의 目的이 된 처분의 取消 · 更正 또는 필요한 처분의 決定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은 당해 處分廳을 기속한다.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이 있는 때에는 당해 處分廳은 決定의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④ 地方稅審議委員會의 組織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注 77-1 「却下決定事項」

1. 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 ①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 ②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자의 불복(당사자 부적격)
 - ③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 ④ 대리권 없는 자의 불복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 심사청구가 불복제기 기간내에 중복 제기되었을 때에는 이청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第78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 이 法에 의한 異議申請 또는 審查請求의 目的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行政審判法의 規定을 적용하

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인이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당해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 함께 기재하여야 하며,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97. 10. 1 新設)

③ 異議申請 또는 심사청구의 결정기관은 당해 申請 또는 請求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결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를, 심사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당해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 서면으로 당해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7. 10. 1 新設)

第58條【지방세심의위원회】 ① 法 第77條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 · 의결하고 기타 지방세제 및 과세표준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내무부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97. 10. 1 新設)

第39條【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등】 ① 令 第58條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세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 1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에서, 다른 1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위원회가 호선하는 위원이 되며, 위원은 지방세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97. 10. 4 新設)

② 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에 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내무부의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 1인은 내무부의 차관보가, 다른 1인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호선하는 위원이 되며, 위원은

지 아니한다.

② 第72조 第1項에 規定된 違法한 처분등에 대한 行政訴訟은 行政訴訟法 第18條 第1項 本文 ·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에 의한 審查請求와 그에 대한 決定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 編者註 : 98. 3. 1부터 시행

지방세제국장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내무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97. 10. 4 新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97. 10. 4 新設)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이상(시·군의 경우에는 5급이상)의 공무원
2. 판사 · 검사 ·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자
3.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자
4.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자
5. 대학에서 범률학 · 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자로서 부교수이상의 직에 제직하는 자
6. 기타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第39條의 2【분과위원회】 ① 令 第58條 第2項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 중 지방세제분과위원회는 지방세제도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는 지방세에 대한 異議申請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과세표준분과위원회는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심의 · 의결한다. (97. 10. 4 新設)

②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97. 10. 4 新設)

第39條의 3【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

<p>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97. 10. 1 新設)</p> <p>⑤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내무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97. 10. 1 新設)</p> <p>⑥ 이 항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97. 10. 1 신설)</p> <p>第59條【異議申請 또는 심사청구에 관한 심의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异議申請 또는 심사청구의 의결에 필요한 의안 및 관련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97. 10. 1 新設)</p> <p>② 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청구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97. 10. 1 新設)</p> <p>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7. 10. 1 新設)</p> <p>④ 위원회는 그 의안의 심의·의결 결과를 자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7. 10. 1 新設)</p> <p>第60條【공매처분의 보류기간】 法 第79條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p>	<p>원회의 위원장(분과위원장 포함한다)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통할한다. (97. 10. 4 新設)</p> <p>② 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97. 10. 4 新設)</p> <p>第39條의 4【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97. 10. 4 新設)</p> <p>② 간사와 서기는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내무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내무부장관이 지명한다. (97. 10. 4 新設)</p> <p>第39條의 5【운영세칙】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97. 10. 4 新設)</p>
--	--

는 住民稅를 말한다.

- (舊法) 5. “農地稅割”이라 함은 이 法의 규정에 의하여 賦課된 農地稅額을 謨稅標準으로 하여 賦課하는 住民稅를 말한다. (76. 12. 31. 改正)
 6. “事務所 또는 事業所”라 함은 人的 및 物的 服務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94. 12. 22. 新設)
 7. “事業場”이라 함은 인적 服務 또는 물적 服務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4. 12. 22. 新設)

第173條【納稅義務者】① 住民稅 均等割의 納稅義務者는 市·郡내에 주소를 둔 개인(納稅義務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市·郡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法人(法人稅의 課稅對象이 되는 法人格 없는 社團·財團 및 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 및 市·郡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事務所 또는 事業所를 둔 개인(이하 “事業場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95. 12. 6. 改正)

(舊法) 第173條【納稅義務者】① 住民稅 均等割의 納稅義務者는 市·郡내에 주소를 둔 개인(納稅義務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市·郡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法人(法人稅의 과세대상이 되는 法人格 없는 社團·財團 및 團體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94. 12. 22. 改正)

(舊法) 第173條【納稅義務者】① 住民稅 均等割의

第130條의 2【納稅義務者등】① 法 第173條 第1項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함은 直前年度의 附加價值稅法에 의한 附加價值稅 謨稅標準額(附加價值稅免稅事業者の 경우에는 所得稅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95. 12. 30. 改正)

(舊令) 第130條의 2【納稅義務者등】① 法 第173條 第1項의 규정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함은 直前年度의 附加價值稅法에 의한 附加價值稅 謨稅標準額(附加價值稅免稅事業者の 경우에는 所得稅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88. 12. 31. 改正)

② 第1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자는 法 第173條 第1項의 규정에 의한 住

【사례】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청구 법인에게 부과한 주민세는 적법한 부과처분이다. (내무부 내심 제94-497호, 1994. 6. 28)

【사례】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소마다 납부의무가 있다. (내무부 세정 13407-503, 1994. 8. 12)

【사례】 법인균등할 주민세 부과시
 ● 사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인적·물적 服務를 갖추고 계속해서 사업이나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며 “계속”이라 함은 당해 사업소나 사무소에 근무하는 종업원등의 소득세할 주민세 특별징수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기간 즉 최소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의미한다. (내무부 세정 13407-543, 1994. 8. 18)

2. 法人稅法 第32條의 규정에 의하여 法人稅의 稅額이 決定 또는 更正된 경우에는 그 결정일 또는 更正日부터 30일 이내

② 法人稅割의 納稅義務者가 第1項의 규정에 의한 申告納付를 하지 아니하거나 申告納付稅額이 第178條의 규정에 의한 算出稅額에 미달하는 때에는 第178條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稅額 또는 그 不足稅額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稅額으로 하여 普通徵收의 방법에 의하여 徵收한다.

(93. 12. 27 新設)

第177條의 3【修正申告納付】 ① 納稅義務者가 第177條의 2의 규정에 의하여 申告納付한 法人稅割의 市·郡별 안분계산세액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法人稅割을 申告納付한 날부터 60일 내에 이를 修正申告納付할 수 있다.

(94. 12. 22 本條新設)

②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修正申告納付를 하는 때에는 追加納付稅額을 納付하여야 하며, 還付받을 稅額에 대하여는 신고와 동시에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년도분 法人稅割에서 還付받을 稅額을 공제하고 申告納付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규정에 의한 修正申告納付로 인하여 追加納付하는 稅額에 대하여는 第177條의 2의 규정에 의한 加算稅를 賦課하지 아니하며, 還付하는 稅額에 대하여는 第46條의 규정에 의한 還付利子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第178條【所得割의 計算方法】 ① 所得割은 所得稅法·法人稅法 또는 이 法의 農地稅의 규정에

★ 編者註：법인세법·소득세법은 본편람 후단
참조

의하여 신고하거나 決定·更正된 所得稅·法人稅(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農地稅로서 納稅義務者가 納付하여야 할 稅額의 총액에 第176條 第2項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第179條의 3의 규정에 의하여 特別徵收된 稅額과 第175條의 규정에 의하여 隨時賦課된 稅額은 이를 공제한다. (94. 12. 22 改正)

② 所得稅法·法人稅法 또는 이 法의 農地稅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所得稅·法人稅·農地稅의 決定 또는 更正으로 인하여 稅額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決定 또는 更正 稅額에 따라 所得割의 稅額을 환부 또는 追徵한다. (94. 12. 22 新設)

(舊法) 第178條【所得割의 計算方法】所得割은 所得稅法·法人稅法 또는 이 法의 農地稅의 규정에 의하여 賦課된 所得稅·法人稅 또는 農地稅의 총액에 第176條 第2項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第179條의 3의 규정에 의한 特別徵收分과 第179條 2의 규정에 의하여 隨時賦課된 所得割의 稅額은 이를 控除한다.

(76. 12. 31 改正)

第179條【少額不徵收】住民稅(特別徵收분을 제외한다)의 稅額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住民稅를 徵收하지 아니한다. (94. 12. 22 改正)

(舊法) 第179條【少額不徵收】住民稅 所得割(特別徵收분을 제외한다)의 稅額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住民稅를 徵收하지 아니한다.

(79. 12. 28 改正)

第179條의 2 刪除

(94. 12. 22)

	<p>얻은 사업자에 대하여 法人稅割住民稅를 賦課할 경우에는 第1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法人稅割의 課稅標準이 되는 法人稅를 각 사업장(附加價值稅法上の 사업장을 말한다)별로 산정된 매출액의 당해 사업연도의 총매출액(零稅率適用對象과 내부 거래의 반출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비율로 안분하여 賦課한다. (84. 12. 31 新設)</p> <p>第130條의 6【事業場을 移轉할 경우의 法人稅割納稅地】法人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당해法人에 대한 法人稅割은 당해法人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法人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市·郡에서 賦課한다. (94. 12. 31 改正)</p> <p>(舊令)第130條의 6【事業場등을 移轉할 경우의 法人稅割納稅地】法人이 사무소·사업소·영업장을 등을 이전할 경우 당해法人에 대한 法人稅割은 당해法人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法人의 사무소·사업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市·郡에서 賦課한다. (93. 12. 31 改正)</p> <p>(舊令)第130條의 6【事業場등을 移轉할 경우의 法人稅割納稅地】法人이 사무소·사업소·영업장을 등을 이전한 경우 당해法人에 대한 法人稅割은 납기개시일 현재 당해法人의 사무소·사업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市·郡에서 賦課한다. 다만, 法第179條의 但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隨時賦課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1. 12. 31 改正)</p>
第176條【稅率】① 均等割의 標準稅率은 다음各號와 같다.	
1. 個人 가. 市·郡내에 住所를 둔 개인	(95. 12. 6 改正)

第3章 市·郡稅 第1節 住民稅 第176條

資本金額 또는 出資金額 100.000원 50億원 이하 30億원 초과 법인으로서 시·도내에 종 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 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 원 이하 법인으로서 시·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 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기타법인	

② 所得割의 標準稅率은 다음과 같다.
(76. 12. 31 改正)

區 分	稅 率
所 得 稅 割	所得稅額의 100分의 7.5
法 人 稅 割	法人稅額의 100分의 7.5
農 地 稅 割	農地稅額의 100分의 7.5

③ 市長·郡守는 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50
연도부의 住民稅의 稅率을 第1項 및 第2項의
標準稅率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註）（91. 12. 14 改正）

〔舊法〕③ 市長·郡守는 당해연도분의 住民稅의
稅率을 第1項 및 第2項의 標準稅率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加減調整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市長·郡守는 미리 道知事を 거쳐 內務部長

★ 編者註 : 1995. 12. 6 改正 法律 부칙 第7條
에서 1996. 1. 1부터 1998. 12. 31까지 100분
의 10을 적용하도록 改正

第63條의 2 刪除 (91. 12. 31)
〔舊則〕第63條의 2【稅率調整의 承認申請】市長·
郡守가 法 第176條 第3項의 규정에 의하여 稅率
調整에 관한 內務部長官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경

(舊法)第179條의 2【普通徵收의 納期】住民稅의 普通徵收의 납기는 條例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所得割에 있어서는 수시賦課할 수 있다.

(86. 12. 31 改正)

第179條의 3【特別徵收】①所得稅法·法人稅法 또는 이 法의 農地稅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所得稅·法人稅를 源泉徵收할 경우 또는 農地稅를 特別徵收할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源泉徵收義務者 또는 特別徵收義務者는 源泉徵收 또는 特別徵收할 所得稅額·法人稅額·農地稅額에 第176條 第2項의 규정에 의한 稅率을 적용하여 계산한 稅額(이하 “特別徵收稅額”이라 한다)을 所得稅·法人稅 또는 農地稅와 동시에 特別徵收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所得稅法 또는法人稅法과 이 法의 農地稅에 관한 규정에서의 源泉徵收義務者와 特別徵收義務者를 住民稅의 特別徵收義務者로 한다. (76. 12. 31 改正)

② 特別徵收義務者가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特別徵收稅額을 徵收하였을 경우에는 그 徵收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市·郡에 納入하여야 한다. 다만, 所得稅法 第128條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分期別로 所得稅額을 源泉徵收하는 경우에는 徵收日이 속하는 分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納入할 수 있다.

(95. 12. 6 改正)

(舊法)② 特別徵收義務者가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特別徵收稅額을 徵收하였을 경우에는 그 徵收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市·郡에 納入하여야 한다. (76. 12. 31 改正)

第130條의 9【特別徵收의 범위】法 第179條의 3 第1項의 규정에 의한 “源泉徵收” 또는 “特別徵收”라 함은 農지세의 特別徵收와 所得稅法上의 源泉徵收 및 法人稅法 第59條의 규정에 의한 源泉徵收를 말한다. (78. 12. 30 改正)

第130條의 10【特別徵收稅額의 納入】① 法 第179條의 3 第1項의 규정에 의한 特別徵收義務者가 住民稅를 特別徵收한 때에는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서를 교부하고 그 부분을 발행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76. 12. 31 改正)

② 特別徵收義務者가 徵收한 特別徵收稅額은 法 第179條의 3 第2項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납입서에 計算書와 明細書를 첨부하여 관할 市·郡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勤勞所得과 利子所得에 대하여는 그 明細書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76. 12. 31 改正)

第64條【領收證】令 第130條의 10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特別徵收義務者가 住民稅 特別徵收稅額納付者에게 交付하는 領收證書와 그 副本은 別紙 第61號書式과 第62號書式에 의한다.

(79. 3. 21 改正)

第65條【特別徵收稅額의 納入】令 第130條의 10 第2項의 규정에 의한 納入書, 計算書와 明細書는 別紙 第63號書式과 第64號書式에 의한다.

(95. 12. 30 改正)

③ 第1項의 규정에 의한 住民稅의 特別徵收義務者가 徵收하였거나 徵收할 稅額을 第2項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지 아니한 稅額 또는 미달한 稅額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稅額으로 하여 特別徵收義務者로부터 徵收한다. 다만,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와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자가 特別徵收義務者인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加算稅는 이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76. 12. 31 改正)

④ 所得稅法 第171條 내지 第175條의 규정에 의하여 納稅組合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所得稅를 徵收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稅額에 第176條 2項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조합원으로부터 住民稅로 徵收하여 그 徵收日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市長·郡守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納稅組合이 徵收하였거나 徵收할 稅額을 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또는 미달하게 납입한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한 稅額 또는 미달한 稅額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稅額으로 하여 納稅組合으로부터 徵收한다. (76. 12. 31 改正)

第179條의 4【稅額通報】政府가 所得稅法·法人稅法의 규정에 의하여 所得稅·法人稅를 決定 또는 更正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1월 이내에 納稅地를 관할하는 市長·郡守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94. 12. 22 改正)

第130條의 11【義務不履行加算稅 加算의例外】法 第179條의 3 第3項 但書의 규정에서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駐韓美國軍의 特別徵收義務者를 말한다. (76. 12. 31 改正)

第66條【稅額通報】令 第130條의 12 第1項 및 第2項의 규정에 의한 所得稅額 또는 法人稅額의 통보는 다음 각號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 (93. 12. 31 改正)

〔舊則〕第66條【稅額通報】令 第130條의 12 第1項 및 第2項의 규정에 의한 所得稅額·法人稅額

	<p>이라 함은 다음 각號의 法人을 말한다. 다만, 第1號 내지 第3號의 경우 당해 국가가 우리나라의 政府機關·國際機構 및 援助團體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住民稅와 동일한 성격의 稅를 賦課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6. 12. 31 改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駐韓外國government機關 2. 駐韓international機構 3. 駐韓外國aid團體 4. 法人이經營하는 各級學校 5. 法人的事業場中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성당·사찰·불당·鄉校등 6. 信用協同組合法에 의하여設立된 信用協同組合 (84. 4. 6 改正) 7. 세마을金庫法에 의하여設立된 세마을금고 (84. 4. 6 新設) 8. 幼兒教育進興法 第2條의 规定에 의한 幼兒教育機關 (86. 12. 31 新設) 	
-401-	<p>第175條【納稅地 등】① 均等割은 매년 8월 1일을 課稅基準日로 하고,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納期로 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納稅地를 관할하는 市·郡에서 住所地 또는 事業場所在地마다 각각 賦課한다. (97. 8. 30 改正) ★ 97. 10. 1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市·郡내에 住所를 둔個人: 住所地 2. 市·郡내에 事業場을 둔個人: 事業場所在地 3. 法人: 事業場所在地 <p>(舊法)第175條【納稅地 등】① 均等割은 매년 8월 1일을 課稅基準日로 하고,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納期로 하여 개인은 주소지를, 法</p>	

人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市·郡에서 주소지 또는 소재지마다 각각 賦課한다.

(94. 12. 22 改正)

(舊法)第175條【納稅地 등】① 개인에 대하여 賦課하는 均等割은 납기개시일 현재 그 개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市·郡에서 賦課한다.

(76. 12. 31 改正)

② 削除 (94. 12. 22)

(舊法)② 法人에 대하여 賦課하는 均等割은 납기개시일 현재 그 法인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市·郡에서 사무소와 사업소마다 각각 賦課한다.

(76. 12. 31 改正)

③ 所得割은所得稅·法人稅 또는 農地稅의 각 納稅地를 관할하는 市·郡에서 隨時賦課한다. 다만, 法人稅割에 있어서 法인의 사업장이 2 이상의 市(特別市 및 廣域市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郡에 소재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郡에서 각각 賦課한다

(97. 8. 30 改正)

★ 97. 10. 1 시행

(舊法)③ 所得割은所得稅·法人稅 또는 農地稅의 각 納稅地를 관할하는 市·郡에서 隨時賦課한다. 다만, 法人稅割에 있어서 法인의 사업장이 2 이상의 市·郡에 소재할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市·郡에서 각각 賦課한다.

(94. 12. 22 改正)

(舊法)③ 所得割은所得稅·法人稅 또는 農地稅의 각 納稅地를 관할하는 市·郡에서 賦課한다. 다만, 法人稅割에 있어서 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가 각각 다른 때에는 大統

第130條의 5【法人稅割의 課稅方法】① 법 제 17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장이 2 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경우 각 시·군에 납부할 법인세할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 한다. 이 경우 특별시·광역시내에서 2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장)소재지의 구에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96. 12. 31 後段新設)

事業場所在地 市·郡 納付稅額 =

$$\text{法人稅割總額} \times \left(\frac{\text{당해 시·군내 종업원 수}}{\text{법인의 총 종업원 수}} + \frac{\text{당해 시·군내 건축물 연면적}}{\text{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right) \div 2 \times \text{당해 시·군의 세율}$$

② 제1항의 종업원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법 제243조 제6호의 규정에

★ 編者註: 내무부령이 정하는 主된 사업장은 規則 第70條 第2項☞318P에

第3章 市·郡稅 第1節 住民稅 第175條

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市·郡에서 각각賦課한다. (76. 12. 31 改正)

④ 第3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第179條의 3의 규정에 의하여 特別徵收하는 所得割 중 劳務所得에 대한 所得稅割은 納稅義務者の 근무지를 관할하는 市·郡에서 賦課하고, 利子所得·配當所得 등에 대한 所得稅의 源泉徵收事務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所得稅割은 그 소득의 支給地를 관할하는 市·郡에서 賦課한다. (94. 12. 22 改正)

(舊法)④ 第3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第179條의 3의 규정에 의하여 特別徵收하는 所得割 중 劳務所得에 대한 所得稅割은 納稅義務者の 근무지를 관할하는 市·郡에서 賦課하고, 國稅廳長의 승인을 얻어 利子所得·配當所得 등에 대한 所得稅의 源泉徵收事務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所得에 대한 所得稅割은 그所得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市·郡에서 賦課한다.

(93. 12. 27 改正)

(舊法)④ 第179條의 3의 규정에 의하여 特別徵收하는 所得割 중 劳務所得에 대한 所得稅割은 第3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納稅義務者の 근무지를 관할하는 市·郡에서 賦課한다. (76. 12. 31 改正)

■ 175-1 「按分對象 稅額」

법 제175조 제3항에 의한 법인세 할의 안분방법은 당해 법인세의 귀속년도에 불구하고 94년 1월 1일 이후 更定 또는 결정되거나 신고납부하는 법인세에 모두 적용한다.

■ 175-2 「근무지」

법 제175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지' 라 함은 본래의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의 수로 하고, 제1항의 건축물 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건물의 경우에는 제75조의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건물의 연면적을, 건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제75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으로 한다.

(96. 12. 31 改正)

[舊令]第130條의 5【法人稅割의 課稅方法】① 法第175條 第3項 但書의 규정에 의하여 法人の 사업장이 2 이상의 市·郡에 소재할 경우 각 市·郡에 납부 할 法人稅割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한다. (96. 4. 27 改正)

$$\begin{aligned} \text{事業場所在地 } & \text{市·郡 納付稅額=} \\ & \text{法人稅總額} \times \left(\frac{\text{당해 시·군내 종업원수}}{\text{법인의 총 종업원수}} \right. \\ & \quad \left. + \frac{\text{당해 시·군내 건축물 연면적}}{\text{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right) \div 2 \\ & \times \text{당해 시·군의 세율} \end{aligned}$$

[舊令]第130條의 5【法人稅割의 課稅方法】① 法第175條 第3項 但書의 규정에 의하여 法人の 사업장이 2 이상의 市·郡에 소재할 경우 각 市·郡에 납부 할 法人稅割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한다. (94. 12. 31 改正)

$$\begin{aligned} \text{事業場所在地 } & \text{市·郡 納付稅額=} \\ & \text{法人稅割總額} \times \left(\frac{\text{당해 시·군내 종업원수}}{\text{법인의 총 종업원수}} \right. \\ & \quad \left. + \frac{\text{당해 시·군내 건축물 연면적}}{\text{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right) \div 2 \end{aligned}$$

第46條【還付利子 計算】納稅義務者 또는 特別徵收義務者가 納付 또는 納入한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에 過誤納이 있을 경우에 그 過誤納金을 第

또는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過誤納이 생긴 것으로 본다. (74. 12. 31 新設)

③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第2項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 또는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納稅義務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4. 12. 31 新設)

④ 過誤納金의 환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内務部令으로 정한다. (74. 12. 31 新設)

야 한다. (79. 3. 21 改正)

③ 과오납금을 환부받을 자가 금고에 그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住民登録證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法人이 지급받고자 할 때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85. 9. 2 改正)

④ 道稅에 대한 과오납금은 市長·郡守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第1項 내지 第3項의 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되, 과오납금의 환부에 필요한 자금은 道稅收納額 중에서 충당한다. 다만, 道稅收納額이 환부하여야 할 금액에 부족할 경우에는 市長·郡守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환부요구에 의하여 道知事が 그 부족액을 직접 환부할 수 있다. (79. 2. 21 改正)

⑤ 第4項 但書의 규정에 의하여 道知事が 과오납금을 환부하는 경우와 과오납금을 환부받을 자가 다른 市·郡에 있는 경우에는 송금방법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에서 지급함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5. 2. 21 改正)

★ 編者註 : 第39條의 개정 규정은 96. 1. 1 이후 발생하는 환부이자부터 적용됨(95. 12. 30 부칙 3)

第39條【還付利子 計算】法 第46條의 규정에 의한 過誤納金의 利子率은 1日 1萬분의 2로 한다. (95. 12. 30 改正)

第21條의 2【過誤納金 計座 移替支給】과오납금을 환부받을 자가 金融機關 또는 電信官署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그 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으로 과오납금을 지급할 수 있다.

(90. 7. 26 新設)

第1章 總則 第10節 過誤納金의 處理 第47條

45條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하거나 환부할 때에는 第47條의 규정에 의한 날로부터 과오납금의 지급을 통지한 날 또는 충당한 날까지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還付利子”라 한다)을 환부 또는 충당할 금액에 가산한다.

(74. 12. 27 改正)

〔舊令〕 第39條【還付利子의 計算】 法 第46條의 규정에 의한 過誤納金의 利子率은 1日 1萬分의 3으로 한다.

(81. 12. 31 改正)

第47條【還付利子의 起算日】 地方自治團體의長이 第46條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그 起算日은 다음 各號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74. 12. 27 改正)

1. 錯誤納付 · 二重納付 또는 納付後 그 賦課의 取消 · 更正決定으로 인한 地方自治團體 徵收金의 還付金에 있어서는 그 納付 또는 納入日의 翌日. 다만, 그 過誤納金이 2 이상의 납기 또는 2회 이상 分割納付 또는 納入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納付 또는 納入日의 익일로 하되, 過誤納金이 최후에 納付 또는 納入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納付 또는 納入일의 順序에 따라 순차로 소급하여 계산한 過誤納金의 納付 또는 納入日의 익일로 한다.
2. 적법하게 納付 또는 納入된 地方稅에 대한 減免으로 인한 過誤納金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의 익일
3. 적법하게 納付 또는 納入된 후의 法律의 변경으로 인한 過誤納金에 있어서는 그 法律의 施行日의 익일

3. 徵收猶豫 등을 받은 자의 재산상황 기타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 第26條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됨으로 인하여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2)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徵收猶豫 등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納稅義務者 또는 特別徵收義務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94. 12. 22 改正)

【통칙】 44-1 「일시에 徵收」

법 제44조 제1항에서 '일시에 징수' 라 함은 법 제41조(징수유예의 요건)의 규정에 의하여分割告知를 허용한 경우에 期限未到來의 純像금액까지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통칙】 44-2 「지정된 기한」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서 '지정된 기한' 이라 함은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각 분할기한을 말한다.

【통칙】 44-3 「기간의 단축」

납부之力의 증가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징수유예의 최소대신에 유예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허용된다.

【통칙】 44-4 「유예기간의 경과」

법 제41조(징수유예 등의 요건)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

한 금액을 유예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그 징수유예의 최소절차를 밟을 필요없이 바로督促 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통칙】 44-5 「徵明의 離取」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유예를 받은 자의 사전변명을 들어 참고하여야 한다.

【통칙】 44-6 「徵收猶豫가 取消된 溢納額의 유예」

고지된 지방세를 법 제41조(징수유예등의 요건)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한 후에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지방세를 다시 법 제44조(체납액등의 징수유예)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할 수 없다.

第 10 節 過誤納金의 處理

第45條【過誤納金의 充當과 讓渡】 ① 過誤納된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과 第46條의 還付利子는 다른 미납의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納稅義務者 또는 特別徵收義務者에

第 8 節 過誤納金의 處理

第36條【過誤納金의 充當】 ① 過誤納金은 未納된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

第19條【過誤納金의 充當通知】 令 第36條 第2

第1章 總則 第10節 過誤納金의 處理 第45條

게 지체없이 還付하여야 한다. (74. 12. 27 改正)
 ② 第1項의 규정에 의한 過誤納金(이자를 포함한다)의 還付는 地方財政法의 규정에 불구하고 還付하는 年도의 수입금 중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남된 회계년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남된 年도의 수입금 중에서 환부할 수 있다. (84. 12. 24 改正)
 ③ 納稅義務者 또는 特別徵收義務者의 還付金(이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권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74. 12. 27 新設)

■ 45-1 「과오남금의 환부대상자」

과오세금은 환부하여야 할 지방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환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세법 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이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1. 12. 31 改正)

第37條【過誤納金의 讓渡】 ① 法 第45條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남금을 권리자가 第3者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號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權利者(양도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讓受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3. 讓渡하고자 하는 過誤納金의 소속년도·세목과 금액
-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第1項의規定에 의한 신청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양도인의 다른 미납금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81. 12. 31 改正)

第38條【過誤納金의 還付】 ① 過誤納金을 미납된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에 충당하고 잔여금이 생겼거나 충당할 것이 없어서 이를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금액·이유·지급절차·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4. 12. 31 改正)

② 納稅義務者 또는 特別徵收義務者와 그 자에 대한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의 第2次納稅義務者가 각각 그 일부를 납부 또는 납입한 地方稅에 過誤納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과오남금의 환부 또는 충당에 관하여는 우선 第2次納稅義務者가 납부

項의 규정에 의한 과오남금의 충당통지는 別紙 第18號書式에 의한다. (79. 3. 21 改正)

第20條【過誤納金의 讓渡申請】 ① 第37條 第1項의 규정에 의한 과오남금의 양도신청은 別紙 第19號書式에 의한다. (79. 3. 21 改正)

第21條【過誤納金의 還付節次】 ① 令 第38條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남금(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환부하고자 할 때에는 別紙 第18號書式에 의하여 그 과오남금을 환부받을 자에게 지급통지를 하고 別紙 第20號書式에 의하여 市·郡金庫에 支給命令書를 송부하여야 한다.
 (79. 3. 21 改正)

② 금고는 과오남금의 환부를 받을 자로부터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지급하고 別紙 第20號書式에 의하여 支給畢通知書를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송부하여

우에 있어 기한의 경과 기타 그 계약의 이행 이외의 이유로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때를 포함한다)에도 讓渡擔保財產으로서 존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第 8 節 納稅保全

第37條【納稅管理人】 ① 納稅義務者 또는 特別徵收義務者が 納稅地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紳稅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紳稅管理人을 징하여 申告하여야 한다.
 ② 紳稅管理人을 변경할 때에도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이 法 중 이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78. 12. 6 改正)
 ③ 第1項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때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紳稅義務者 또는 特別徵收義務者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紳稅管理人으로 지정할 수 있다. (62. 12. 29 新設)

【註】 37-1 「남세관리인의 권한 소멸후의 효과」

남세관리인의 권한 소멸후 그 소멸한 사실을 모르고 그 남세관리인에게 행한 행위 또는 그 남세관리인에게 행한 행위는 당해 남세자(남세의 무승계자 포함)에게 五력이 있다.

第38條【納稅完納證明書 등의 提出】 紳稅義務者 또는 特別徵收義務者は 國稅徵收法의 규정에 의하여 國稅에 관한 紳稅完納證明書·徵收擔豫證明書 또는 未課稅證明書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地

第 6 節 擔保保全

第18條【納稅管理人の 變更】 ① 市長·郡守는 남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紳稅義務者 또는 特別徵收義務者에 대하여 기한을 지정하여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81. 12. 31 改正)
 ② 第1項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紳稅義務者 또는 特別徵收義務者が 그 지정기한까지 남세관리인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남세관리인의 설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 市長·郡守는 法 第37條 第3項의 ④항에 의하여 남세관리인을 징할 수 있다. (81. 12. 31 改正)
 ③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法 第37條 第3項의 규정에 의하여 남세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紳稅義務者와 그 남세관리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第19條【納稅完納 또는 徵收擔豫證明의 意義】 法 第38條에서 “地方稅完納證明書”라 함은 紳稅義務者 또는 特別徵收義務者の 주소와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발급하는 날 현재에 그 紳稅義務者

第13條【納稅管理人の 設定과 變更申告】 ① 紳稅義務者 또는 特別徵收義務者が 法 第37條의 규정에 의하여 남세관리인의 설정 또는 변경의 신고를 할 때에는 別紙 第9號書式에 의한다.

② 今 第18條 第3項의 규정에 의하여 남세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別紙 第10號書式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p>小한 課稅標準額 稽用比率를 끝하여 決定한 價額</p> <p>2. 土地외의 課稅對象에 대한 時價標準額은 大統 領令이 정하는 價額</p> <p>(舊法)② 第1項의 규정에 의한 課稅標準額은 條 例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 고가액이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課稅時 價標準額(이하 이 절에서 “時價標準額”이라 한 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時價標準額에 의한다. (78. 12. 6 改正)</p> <p>③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또는 건축물의 개축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u>기계장비</u>의 종 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는 그 증축에 소요되는 금액 또는 개축과 종류변 경이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課稅標準으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第2項의 신 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 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93. 6. 11 改正) (97. 8. 30 改正)</p> <p>④ 第105條 第6項의 규정에 의하여 富山株式会社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法人の 부동산·차량· <u>기계장비</u>·임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 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 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課稅標準은 그 부동 산·차량·기계장비·임목·항공기·선박·광업 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증가액을 그 法人の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除한 가액에 富山株式</p>	<p>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土地等級價格(이하 “土地等級價格”이라 한다)으로 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 또는 그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 지는 세로이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가격 (84. 4. 6 改正)</p> <p>2. 建物·船舶</p> <p>매년 1회條例로서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 인을 얻어 市長·郡守가 결정한 가액. 다만, 이미 결정한 課稅時價標準額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課稅時價標準額을 변 경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課稅時價標準 額을 결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형태·위치·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 (89. 8. 24 改正)</p> <p>② 차량·<u>기계장비</u>·항공기·임목·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조사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 재의 시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1월 1일 현재 없었거나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물인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 가를 기준으로 하고,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 다. (97. 10. 1 改正)</p> <p>(94. 12. 31 改正) (95. 12. 30 改正)</p> <p>(舊令)② 차량·건설기계·항공기·임목·골프회 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조사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課稅時</p>	<p>2. 船舶</p> <p>선박의 時價標準額은 선질별·용도별·기관의 종류 및 동력장치 유무 등에 의한 건조가격에 경 과년수를 참작하여 결정한다. (95. 12. 30 改正)</p> <p>第40條의 6【建物 및 船舶의 價額決定에 따른 承認申請 등】① 第40條의 5의 규정에 의하여 市 長·郡守가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 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및 전 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에게 자문을 한 후 조례가 정하는 날 현재의 결정분에 대하여 그 결정일 전 60일까지 도지사에게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하여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95. 12. 30 改正) (97. 10. 4 改正)</p> <p>② 道知事が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市長·郡守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79. 1. 23 新設)</p> <p>③ 市長·郡守는 第1項 및 第2項의 규정에 의하 여 건물 및 선박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때 에는 당해 道·市·郡에서 발행하는 도보 또는 시 보·군보에 이를 고시하고, 납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7. 10. 4 改正)</p> <p>(舊則)③ 市長·郡守가 第1項 및 第2項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 및 선박에 대한 時價標準額을 결정할 때에는 당해 道·市·郡에서 발행하는 도보 또는 시보·군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86. 12. 31 新設) (95. 12. 30 改正)</p> <p>★ 編者註: 第40條의 7 1371에 ★ 編者註: 第40條의 8 1331에</p>
---	---	--

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財產稅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86. 12. 31 改正)

③ 削除 (90. 12. 31)

(舊法)③ 鎌業法 第79條의 규정에 의한 國營鎌業에 있어서 그 경영에 속하는 鎌業權에 대한 것은 그 國營鎌業을 경영하는 法人이 財產稅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86. 12. 31 改正)

④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地方自治團體組合과 財產稅 課稅對象物件을 년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財產稅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95. 12. 6 改正)

(舊法)④ 國·道·市·郡·地方自治團體組合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公共團體와 財產稅 課稅對象物件을 년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財產稅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89. 6. 16 改正)

⑤ 信託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財產稅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第37條의 규정에 의한 納稅管理人으로 본다. (93. 12. 27 新設)

⑥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內務部令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財產稅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94. 12. 22 新設)

第183條【國家 등에 대한 非課稅】 ① 國家·地方自治團體·地方自治團體組合·外國政府 및 駐韓國際機構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財產

條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그 사용자를 소유자로 보아 財產稅를 賦課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76. 12. 31 改正)

第134條 削除 (94. 12. 31)

(舊令)第143條【公共團體의 범위】 ① 法 第182條 第4項 및 法 第183條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公共團體”라 함은 法 第110條의 3 第1項 및 法 第110條의 4 第1項의 규정에 의한 法人을 말한다. (86. 12. 31 改正)

② 削除 (89. 8. 24)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한 해석이며, 신축 건물의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다면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음.(세정 22670-524, 89. 2. 13)

【사례】 잔금지급일(은행용 자금대환일)과 재산세 납부의무자 (세정 13407-377, 1994. 7. 20)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5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 또는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나 사실상의 소유여부는 잔금지급일(융자금대환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입주를 하였다 하더라도 잔금을 과세기준일 이후에 지급하였다면 재산세는 5월 1일 현재의 소유자인 건축주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第77條【主된 相續者的 기준】 法 第182條 第6項에서 “內務部令이 정하는 주된 相續者”라 함은 民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호주승계인으로 하고, 호주승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94. 12. 31 新設)

8. 韓國放送公社法에 의하여 설립된 韓國放送公社가 방송국·송신소·중계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91. 12. 14 新設)	第79條의 17 削除 〔舊令〕第79條의 17【報道·取材用 航空機의 범위】法 第110條의 4 第2項 第7號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報道·取材用航空機”라 함은 定期刊行物의 登錄 등에 관한 法律·放送法 또는 綜合有線放送法에 의한 신문·통신·방송 또는 프로그램 공급사업자가 보도·취재를 위하여 사용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93. 12. 31 改正)
9. 觀光振興法의 규정에 의한 觀光團地開發事業施行者가 觀光團地開發事業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	
10. 韓國電力公社法에 의하여 설립된 韓國電力公社가 原子力發電所를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91. 12. 14 新設)	

第2款 課稅標準과 稅率

第111條【課稅標準】① 取得稅의 課稅標準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年賦로 取得하는 경우에는 年賦金額으로 한다.

(78. 12. 6 改正)

② 第1項의 规定에 의한 취득당시의 價額은 取得者가 신고한 價額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申告價額의 표시가 없거나 그 申告價額이 다음 各號에 정하는 時價標準額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時價標準額에 의한다. (95. 12. 6 本項改正)

1. 土地에 대한 時價標準額은 地價公示 및 土地등의 評價에 관한 法律에 의한 個別公示地價(個別公示地價가 없는 土地의 경우에는 市長·郡守가 同法 第10條의 规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제공한 土地價格比準表를 사용하여 算定한 地價를 말한다)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決定告

第80條【時價標準額의 決定】① 건물 및 선박의 時價標準額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 결정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형태·위치·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

(95. 12. 30 改正)

〔舊令〕第80條【課稅時價標準額의 決定】① 토지·건물 및 선박의 課稅時價標準額은 다음 各號의 가격 또는 가액으로 한다. (78. 12. 30 改正)

1. 토지

매년 1회 條例로서 정하는 날 현재 第80條의 2

★ 編者註: 第40條의 4 · 148P에

第40條의 5【建物등의 時價標準額의 決定】令 第80條 第1項의 규정에 의한 建物 및 船舶의 時價標準額은 다음 各號의 1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95. 12. 30 改正)

(97. 10. 4 改正)

〔舊則〕第40條의 5【不動產課稅市價標準額의 決定】令 第80條의 第1項의 규정에 의한 不動產課稅時價標準額은 다음 各號의 1에 의하여 결정하여야만 한다. (86. 12. 31 改正)

1. 建物

건물의 時價標準額은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94. 12. 31 改正)(95. 12. 30 改正)

<p>는 更正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特別徵收義務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6. 12. 31 改正)</p> <p>第234條의 5【加算稅額】第234條의 4의 규정에 의한 申告納入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決定 또는 更正한 稅額에 그 稅額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稅額으로 하여 特別徵收義務者로부터 徵收한다. (76. 12. 31 改正)</p> <p>第234條의 6【領收證書 交付義務】特別徵收義務者가 第234條의 4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屠畜稅를 徵收할 때에는 그 領收證書를 納付者에게 交付하고 그 副本을 보관하여야 한다. (76. 12. 31 改正)</p> <p>第234條의 7【免稅規定의 適用排除】 다른 法律에 규정된 租稅의 免除에 관한 규정은 屠畜에 관한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76. 12. 31 改正)</p> <p>第 7 節 綜合土地稅 (89. 6. 16 本節新設)</p> <p>第 1 款 通 則</p> <p>第234條의 8【課稅對象】綜合土地稅의 課稅對象은 모든 토지로 한다. (94. 12. 22 改正) (舊法)第234條의 8【課稅對象】綜合土地稅의 課</p>	<p>第194條의 3【領收證書 副本의 保管】法 第234條의 6의 규정에 의한 屠畜稅 領收證書의 부본은 그 발행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76. 12. 31 改正)</p> <p>第194條의 4【屠畜關係書類의 閱覽】稅務公務員이 屠畜稅의 賦課徵收에 관하여 도축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것을 청구할 경우에는 그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76. 12. 31 改正)</p> <p>第 7 節 綜合土地稅 (89. 8. 24 本節新設)</p> <p>[墨] 234의 8-1 「모든 土地」 법 제234조의 8의 '모든토지' 라 함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기록되는 토지대장상의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대장상 지</p>	<p>第234條의 4 第4項의 규정에 의한 稅額의 결정 또는 경정통지는 別紙 第96號書式에 의한다. (79. 3. 21改正)</p> <p>第104條의 4【屠畜稅領收證】法 第234條의 6의 규정에 의하여 特別徵收義務者가 도축자에게 교부하는 영수증과 그 부본은 別紙 第97號書式에 의한다. (79. 3. 21 改正)</p> <p>第 7 節 綜合土地稅 (89. 11. 13 本節新設)</p>
--	---	--

稅對象은 자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로 한다.
(89. 6. 16 新設)

第234條의 9【納稅義務者】① 綜合土地稅 課稅基準日 현재 第234條의 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綜合土地稅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持分權者를 納稅義務者로 본다.

【解】 234의 9-1 「사실상의 소유자」

법 제234조의 9 제1항의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73조에 규정된 취득의 시기가 도래되어 낭해 토지를 취득한 자를 말하며, 법 제234조의 2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234조의 9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解】 234의 9-3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

법 제234조의 9 제1항의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를 판단함에 있어 과세기준일에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양도·양수된 때에는 양수인을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본다.

② 第1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綜合土地稅 課稅基準日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綜合土地稅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公簿上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목 등이 등재되어 있지 않는 미등록 토지도 포함된다.

【事例】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의 체비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여부 (세정 13407-418. 1994. 7. 26)

- 종합토지세는 토지보유에 대한 기본세제로서 비록 이 사업지구 내의 체비지를 사업에 충당한다 할지라도 이는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임.

【통칙】 234의 9-2 「公簿上 所有者」

법 제234조의 9 제2항의 「공사상의 소유자」라 함은 등기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미등기인 경우에는 토지?장 또는 임야대장상의 소유자를 말한다.

2.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相續登記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內務部令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통칙】 234의 9-5 「상속재산에 대한 납세의무」

상속은 민법 제99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며,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자가 持分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된 지분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신고가 없으면 규칙 제104조의 5 규정에 의거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登載되어 있는 사실상의 宗中土地로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宗中所有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통칙】 234의 9-6 「종종토지의 의미」

법 제234조의 9 제2항 제3호의 「종종」이라 함은 공동선조의 墓廟守護과 祭祀 및 종종원 상호간의 親睦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 집단체를 말하며, 종종원 개인명의로 등기된 종종토지는 법 제234조의 21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4. 國家 · 地方自治團體 · 地方自治團體組合과 綜合土地稅 課稅對象 土地를 倘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95. 12. 6 改正)

第104條의 5【主된 相續者의 基準】 法 第234條의 9 第2項 第2號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를 民法上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人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호주승계인으로 하고, 호주승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94. 12. 31 改正)

第194條의 5【納稅義務者의 범위】

- ① 削除 (94. 12. 31)
② 國家 · 地方自治團體 및 地方自治團體組合 이 선수금을 받아 매매용토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

	<p>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97. 10. 1 新設)</p> <p>⑤ 第1項 第2號라목 및 바목과 제2항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고,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목장용지중 도시계획구역안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목에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목장 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 (97. 10. 1 改正)</p> <p>(舊令)⑤ 第1項 第2號라목 내지 바목과 第2項 第4號 및 第6號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고, 第2項 第5號 각목에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 (96. 4. 27 改正)</p> <p>(舊令)⑤ 第1項 第2號(4) 내지(6)과 第2項 第4號 및 第6號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94. 12. 31 改正)</p> <p>(舊令)⑤ 第1項 第2號(4) 내지(6)과 第2項 第4號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p> <p>(90. 6. 29 新設)</p> <p>第194條의 16【課稅標準額】① 法 第234條의</p>
--	---

★ 編者註：第234條의 15

③ 別途合算課稅標準은 課稅基準日 현재 納稅義務者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 토지 중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第2項 第1號 및 第2號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分離課稅標準은 第2項 第3號 내지 第6號의 가액으로 한다.

⑤ 第2項 내지 第4項의 规定에 의한 土地의 價額은 地價公示 및 土地등의 評價에 관한 法律에 의한 個別公示地價(個別公示地價가 없는 土地의 경우에는 市長 · 郡守가 同法 第10條의 规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提供한 土地價格比準表를 사용하여 算定한 地價를 말한다)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決定告示한 課稅標準額 適用比率을 곱하여 算定한 價額으로 한다. (95. 12. 6 新設)

【註】 234의 15-3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법 제234조의 15 제5항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라 함은 지적법 제15조 내지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 신규등록, 등록 전환 및 같은 법 제17조 내지 제18조, 제20조 내지 제21조에 의한 分割 · 分併 · 지목변경된 토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 및 비과세지에서 과세지로 전환된 토지 중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을 말한다.

第234條의 16【稅率】 ① 第234條의 15 第2項의 规定에 해당하는 토지의 綜合土地稅는 다음의 稅率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稅額(이하 “綜合算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90. 4. 7 改正)

15 第3項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이라 함은 第194條의 14 第1項 및 第3項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

(95. 12. 30 改正)

[舊令] 第194條의 16【別途合算 課稅標準】 ① 法 第234條의 15 第3項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이라 함은 第194條의 14 第1項 및 第3項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 (91. 5. 23 改正)

② 법 제234조의 15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기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95. 12. 30 新設)

③ 내무부장관은 법 제234조의 15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95. 12. 30 新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연도에 적용할 종합 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당해연도 과세기준일까지 결정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결정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새로 결정고시할 때까지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적용한다.

(95. 12. 30 新設)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률 제4995호 지방세법 중 개정 법률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말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개별공시지가

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綜合土地稅를 追徵한다.
(91. 12. 14 新設)

11. 大韓礦業振興公社法에 의하여 설립된 大韓礦業振興公社가 石材技能工訓練施設과 鐵山保安法 第7條의 규정에 의한 保安管理職員의 위탁 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물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③ 다른 法令에서 綜合土地稅의 輕減規定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課稅標準額에 대해 輕減比率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第2款 課稅標準 및 稅率

第234條의 15【課稅標準】 ① 綜合土地稅의 課稅標準은 綜合合算課稅標準·別途合算課稅標準 및 分離課稅標準으로 구분한다.

② 綜合合算課稅標準은 課稅基準日 현재 納稅義務者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價額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號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95. 12. 6 改正)

[舊法] ② 綜合合算課稅標準은 課稅基準日 현재 納稅義務者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第111條의 규정에 의한 課稅特價標準額을 말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號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第104條의 7【地上定着物의 범위】 ① 法第234條의 15 第2項 本文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建築物의 附屬土地”라 함은 건축물(法 第104條 第4號의 규정에 의한 建築物과 內務部令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을 말하며,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課稅基準日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 중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第2項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第104條의 7【地上定着物의 범위】 ① 法第194條의 14【建築物 附屬土地의 범위】 ① 法

의 14 第1項 本文에서 “內務部令으로 정하는 地上定着物”이라 함은 다음 각號에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4. 12. 31 改正)

1. 가스배관시설 및 옥외배전시설
(94. 12. 31 新設)

2. 電波法에 의하여 방송전파를 송·수신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국 허가를 받아 설치한 송·수신시설 및 중계시설
(96. 12. 31 改正)

[舊則] 2. 電波法에 의하여 방송전파를 송·수신하기 위한 무선국 허가를 받아 설치한 송·수신시설 및 중계시설
(94. 12. 31 新設)

1. 이 법 또는 關係法令의 규정에 의하여 綜合土地稅가 非課稅 또는 免除되는 토지의 가액

2. 이 法 또는 다른 法의 규정에 의하여 総台土
地稅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 (94. 12. 22 改正)

[舊法] 2. 第234條의 14의 규정에 의하여 総合地稅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 (89. 6. 16 新設)

【사례】 11. 이승관씨 성이현 부동토사의 충합도
자세 과제표준에 한정방법 (세장 13-107-956,
1991. 11. 18.)

- 일반영위권 분족들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과세는 선축동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배율을 적용하여 기준면적을 산출하여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 합산과세하고 초과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 과세로 두 되어 있음.

이 경우 부속토지의 등급이 서로 같지 아니할 때에는 총과표율을 산출한 후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와 기준면적 초과분 토지의 면적에 따라 비례 안분하여 과표율을 산출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 編者註: 1996년도부터는 개별공시지가 적용

통 칙 234의 18-1 「부속토지의 範地別 가액이 다른 경우의
과세표준 산출」

제194조의 1-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用途地別 적용배율을 감하여 기준면적을 산출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부속도지의 개세표준이 서로 구식이 아니한 때에는 종가표를 산출한 수기준면적 아래의 노지와 기준면적 조과도지의 면적에 따라 비례안분하여 각각 개세표준을 산출한다.

1. 공장구내의 건축물[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 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안에서는 산업임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에 한한다]과 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 (96. 12. 31改正)

(舊令) 1. 工場區內의 建築物(特別市, 廣城市(군
지역을 제외한다), 시지역 안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안에
서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에 한한다)과 法 第
234條의 15 第2項 第5號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建築物 (95. 8. 21 改正)

(舊令) 1. 工場構內의 建築物(特別市, 直轄市, 市地
域 안에서는 產業立地 및 開發에 관한 法律에 의
하여 지정된 工業園地 및 都市計劃法에 의하여
지정된 公業지역 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에
한한다)과 法 第234條의 15 第2項 第5號의 규
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 (91. 12. 31 改正)

2. 住居用建築物(1구의 건축물이 주거와 주거와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内務部令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3. 第1號 및 第2號 외의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時價標準額이 당해 부속토지의 時價標準額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

(舊則)第104條의 7【地上定着物의 범위】令 第
194條의 14 第1項 本文에서 “內務部令으로 정하
는 地上定着物” 이라 함은 가스배관시설 및 옥외배
전시설을 말한다.

【사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건축하지 않고 있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대법원 95누 7857. 1995. 9. 26)

'건축중인 건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고,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을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위 시행령 제194조의 14 제1항 소정의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第104條의 8【住居와 겸용하는 建築物의 用途別 適用基準】令 第194條의 14 第1項 第2號에서 “內務部令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第46條의 2의 규정에 의한 高級娛樂場用 건축물면적을 제외한다.

(95. 12. 30 改正)

(舊令) 3. 第1號 및 第2號 외의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課稅時價標準額이 당해 부속토지의 課稅時價標準額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건축물
 4.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축물 중 建築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96. 12. 31 改正)

(舊令) 4. 第1號 및 第2號 외의 건축물 중 建築法 등 關係法令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93. 12. 31 改正)

(舊令) 4. 第1號 및 第2號 외의 건축물 중 建築法 등 關係法令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89. 8. 24 新設)

② 第1項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用途地域別	適用倍率	
都 市 計 劃 區 域	● 住居專用地域 ● 商業地域·準住居地域 ● 住居地域·工業地域·準工業地域 및 專用工業地域 ● 綠地地域 ● 未計劃地域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	5倍 3倍 4倍 7倍 4倍 7倍

1. 1구의 건축물 연면적 중 100분의 50 이상을 사용하는 용도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을 그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2. 1구의 건축물 연면적 중 100분의 50 이상을 사용하는 용도가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에供하는 건축물 면적부분을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第104條의 9【建築物 時價標準額의 基準】 令 第194條의 14 第1項 第3號에서 "建築物의 時價標準額"이라 함은 당해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時價標準額을 말한다.
 (95. 12. 30 改正)

【사례】 아파트 모델하우스의 부지는 기준면적 등 범위 이내에서 별도 합산대상이다.(내무부 도세 22670-2172, 1990. 7. 4)

第104條의 10【工場用建築物의 定義】 令 第194條의 15 第1項 第1號에서 "內務部令으로 정하는 工場用建築物"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 구역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호의 부대시설용건축물과 공업배차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장 경계구역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97. 10. 4 改正)

<p>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第1項 및 第2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法 第234條의 15 第2項 본문의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본다. (91. 5. 23 新設)</p>	<p>〔舊則〕第104條의 10【工場用建築物의 定義】 令 第194條의 15 第1項 第1號에서 “內務部令으로 정하는 工場用 建築物”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건 축물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 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호의 附帶施設用建築 物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장경계구역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 물을 말한다. (95. 12. 30 改正)</p>
<p>1. 旅客自動車터미널 및 貨物流通促進法의 규정 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 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용 토지 (92. 6. 11 改正)</p>	
<p>2. 自動車運輸事業法에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 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 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 면 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 (94. 12. 31 改正)</p>	
<p>3. 建設機械管理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 고를 한 자가 그 신고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 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정비업 또는 건설기계 매매업의 신고기준에 적합한 주기장 또는 옥외 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 (97. 10. 1 改正)</p>	
<p>〔舊令〕3. 建設機械管理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 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 하는 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건설기계정비업 허 가기준상의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 (94. 12. 31 改正)</p>	
<p>4. 學院의 設立·運營에 관한 法律에 의하여 인가 된 自動車運轉學院의 자동차운전교습장용 토지 로서 同法의 시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시설을</p>	<p>〔舊則〕第104條의 10【工場用建築物의 定義】 令 第194條의 15 第1項 第1號에서 “內務部令으로 정하는 工場用 建築物”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건 축물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 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호의 附帶施設用建築 物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장경계구역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 물을 말한다. 다만, 사실상의 공장용 건축물로서 第104條의 8의 규정에 의하여 住居등 다른 용도 의 건축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 (91. 12. 31 改正)</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 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2. 수조·저유조·싸이로·저장조등 저장용 옥외 구축물3. 송유관·옥외주유시설·급·배수시설 및 변전 실4.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 효율증대를 위한

	<p>갖춘 구역안의 토지 (94. 12. 31 改正)</p> <p>5. 港灣法에 의하여 海運港灣廳長 또는 市·道知事が 지정 또는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장치장용 토지와 關稅法에 의하여 稅關長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장치장용 토지로서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등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이내의 토지</p> <p>6.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자동차폐차사업장용·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에 한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 (97. 10. 1 改正)</p> <p>(舊令) 6.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사업 및 자동차폐차사업에 한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사업장용 또는 자동차 폐차사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 (96. 4. 27 改正)</p> <p>(舊令) 6.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에 한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용 토지로서 자동차정비시설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 (95. 8. 21 新設)</p> <p>7. 流通園地開發促進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안의 토지로서 동법 제2조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통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p>	<p>시설</p> <p>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p> <p>7.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육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동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p> <p>(舊則) 第104條의 10【工場用建築物의 定義】 今 第194條의 15 第1項 第1號에서 “內務部令으로 정하는 工場用建築物”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의 경계구 역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사실 상의 공장용건축물로서 第104條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등 다른 용도의 건축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 (89. 11. 13 新設)</p>
--	--	--

★ 編者註 : 第234條의 15 第2項

3. 大統領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 · 전 · 담 · 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

【사례】 임대한 공장용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구분 (세정 13407-44, 1994. 4. 25)

● 토지소유자가 상이한 2개 이상의 필지로 공장용지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도 이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234의 15-1 「공장입지 기준면적」

규 제194조의 15 제1항 제1호에 정한 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공장구내의 토지인 경우 필지수 또는 지목에 불구하고 공장구내의 전체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입지기준면적을 계

법 제2조 제12호 ·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센터 및 공동집배송 단지로서 내무부장관이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97. 10. 1 改正)

(舊令) 7. 流通團地開發促進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안의 토지로서 동법 제2조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통시설용토지 및 都·小賣業振興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센터 또는 집배송단지로서 내무부장관이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96. 12. 31 改正)

(舊令) 7.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안의 토지로서 동법 제2조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통시설용 토지

(95. 12. 30 新設)

第194條의 15【分離課稅 對象土地】 ① 法 第234條의 15 第2項 第3號에서 “大統領령으로 정하는 工場用地 · 전 · 담 · 과수원 및 牧場用地” 라 함은 다음 各號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內務部令으로 정하는 工場用建築物(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課稅基準日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의 부속토지[特別市 · 廣城市(군지역을 제외한다) · 시지역(읍 · 면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한다]로서

第104條의 11【工場立地 基準面積】 令 第194條의 15 第1項 第1號에서 “內務部令으로 정하는 工場立地基準面積”이라 함은 別表4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

산한다.

[註] 234의 15-2 「소유하고 있는 농지 또는 토지」
제194조의 15의 각항 각호 각목에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
또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 함은 과세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토지를 임대
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內務部令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안
의 토지. 다만,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綜合合算課稅對象土地로 한다.

(96. 12. 31 改正)

[舊令] 1. 공장용지

內務部令으로 정하는 工場用建築物(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課稅基準日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
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의 부속토지[特別
市·廣域市(군지역을 제외한다) 시지역 안에서
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
정된 공업단지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
지에 한한다]로서 內務部令으로 정하는 공장입
지기준면적 범위안의 토지. 다만, 공장입지 기
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綜合合算課稅대상토
지로 한다. (95. 8. 21 改正)

[舊令] 1. 공장용지

內務部令으로 정하는 工場用建築物(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課稅基準日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
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의 부속토지(特別
市·直轄市·市地域 안에서는 產業立地 및 開
發에 관한 法律에 의하여 지정된 工業團地 및
都市計劃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안에 위
치한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한다)로서
內務部令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안
의 토지. 다만,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綜合合算課稅대상토지로 한다.

(90. 6. 29 改正)(91. 12. 31 改正)

〔舊令〕1. 공장용지

內務部령으로 정하는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
 (特別市·直轄市·市地境안에서는 工業團地管
 理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및 都市計劃法
 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한다)로서 内務部령으
 로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다만,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総
 合算課稅 대상토지로 한다.

2. 田·畠·果樹園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條에서 “農地”라
 한다)의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
 로미터이내의 지역에 課稅基準日 현재 6월이
 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
 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 다만,
 特別市·廣城市(군지역을 제외한다)·市地
 域(邑·面地域을 제외한다)의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96. 4. 27 改正)

〔舊令〕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條에서 “農
 地”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區·市·邑·
 面 또는 그와 연접한 다른 區·市·邑·面 지
 역(농지의 소재지로부터 農地貸借管理法 施
 行令 第23條 第2項 第2號에서 規定된 거리이
 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에 課稅基準日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 다만,
 特別市·廣城市(군지역을 제외한다)·市地域
 (邑·面地域을 제외한다)의 도시계획구역안의

	<p>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95. 8. 21 改正)</p> <p>(舊令)가 전·답·과수원(이하 이條에서 “農地”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区·市·邑·面 또는 그와 연접한 다른 区·市·邑·面 지역(농지의 소재지로부터 農地貸借管理法 施行令 第23條 第2項 第2號에서 規定된 거리 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에 課稅基準日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 다만, 特別市·直轄市·市地域(邑·面地域을 제외한다)의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 는 것에 한한다. (94. 12. 31 改正)</p> <p>(舊令)(1) 전·답·과수원(이하 이條에서 “農地”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市·區·邑·面(농지 소재지와 서로 연접한 다른 市·區·邑·面을 포함한다)에 課稅基準日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 다만, 特別市·直轄市·市地域의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91. 5. 23 改正)</p> <p>나.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의하여 설립된 農組合法인이 소유하는 농지 (90. 6. 29 新設)</p> <p>다. 農漁村進興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에 의하 여 설립된 農漁村進興公社가 同法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p>	<p>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p> <p>第6條【영농조합 법인의 육성】 ① 협업적 농업 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 수출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94. 12. 22 改正)</p> <p>②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한다. (94. 12. 22 改正)</p> <p>③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중 정관이 정하는 자를 그 조합원으로 한다. (94. 12. 22 신설)</p> <p>④ 농업인 또는 농산물의 생산자 단체가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p>
--	--	---

지

라. 關係法令의 규정에 의한 社會福祉事業者가 복지시설의 소비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90. 6. 29 新設)

마. 매립·간척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경작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에 한한다. (97. 10. 1 改正)

[舊令]마.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립·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경작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96. 12. 31 改正)

[舊令]마.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립·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도시계획구역 밖의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경작하는 농지, 이 경우 주업의 판단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95. 12. 30 新設)

[舊令]마. 傳統寺刹保存法 第2條의 규정에 의한 사찰의 경내지인 농지 (90. 6. 29 新設)

바. 宗中이 소유하는 농지 (90. 6. 29 新設)

3. 牧場用地

個人 또는 畜產業을 주업으로 하는 法人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과 도시계획구역 밖의 목장용으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94. 12. 22 신설)

⑤ 영농조합법인은 그 명칭 중에 영농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영농조합법인이 아닌 자는 영농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농업인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94. 12. 22 개정)

⑦ 영농조합법인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⑧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출자, 사업, 정관기재사항, 해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영농조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93. 6. 11 개정)

⑩ 영농조합법인은 그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94. 12. 22 신설)

第104條의 12【主業의 判断基準】 以及 第194條의 15 第1項 第3號의 규정에 의한 주업은 제46조의 6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97. 10. 4 改正)

—427—

- ★ 編者註：第234條의 15 第2項
 4. 山林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宗中 소유 임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

文化財保護法

第8條【保護物 또는 保護區域의 指定】 문화재 육부장관은 第4條·第6條 또는 第7條의 規定에 의

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제 84조의 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의 범위안에서 소유하는 토지. 이 경우 주업의 판단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97. 10. 1 改正)

(舊令) 3. 牧場用地

個人 또는 農産業을 주업으로 하는 法人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계획구역밖의 목장용지로서 課稅基準日이 속하는 해의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第84條의 4 第3項 第3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용토지 및 건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의 범위안에서 소유하는 토지. 이 경우 주업의 판단기준은 內務部令으로 정한다.

② 法 第234條의 15 第2項 第4號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林野”라 함은 다음 각號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山林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임야. 다만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를 제외한다.

(97. 10. 1 改正)

(舊令) 1. 山林法에 의한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同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임야와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의 임야를 제외한다.

2. 文化財保護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3. 自然公園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 지역안

(舊則) 第104條의 12【主業의 判斷基準】 令 第194條의 15 第1項 第2號 마目 및 同項 第3號의 규정에 의한 主業은 第46條의 6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95. 12. 30 改正)

(舊則) 第104條의 12【主業의 判斷基準】 令 第194條의 15 第1項 第3號의 규정에 의한 주업은 第46條의 6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한 指定에 있어서 文化財의 보호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保護物 또는 保護區域을 指定 할 수 있다.

★ 增補註 : 第5項으로 이전

의 임야

4. 宗中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90. 6. 29 但書削除)

(舊令)4. 宗中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다만, 도시 계획구역 안의 임야를 제외한다.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야.

(96. 4. 27 但書削除改正)

(舊令)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95. 12. 30 本號改正)

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 중 제한보호구역 안의 임야 및 동제한보호 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다.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라. 도로법에 의하여 지정된 첨도구역 안의 임야 (97. 10. 1 新設)

마.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노선인 접지역 안의 임야 (97. 10. 1 新設)

바. 도시공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안의 임야 (97. 10. 1 新設)

사. 하천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안의 임야 (97. 10. 1 新設)

(舊令)5. 都市計劃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및 軍事施設保護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

自然公園法

第16條【用途地區】① 內務部長官·道知事 또는 郡守는 公園의 效率的인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用途地域을 公園計劃으로決定한다.

1. 自然保存地區：自然保存狀態가 原始性을 가지고 있거나 保存할 動·植物 또는 天然記念物등이 있거나 自然風景이 특히 秀麗하여 特別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곳

2. 自然環境地區：自然保存地區·聚落地區·集團施設地區를 제외한 全地區

3. 聚落地區：住民의 聚落生活 및 農耕地 또는 農漁民의 生活根據地로 유지·管理할 필요가 있는 地區

4. 集團施設地區：公園入場者에 대한 便宜 제공 및 公園의 보호·管理를 위하여 公園施設이 集團化 되었거나 集團化 되어야 할 곳

—429—

★ 編者註：第234條의 15 第2項
5. 골프장·별장 기타 奢侈性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

【사례】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의 의미 (대법원 91누 10985, 1993. 7. 27)

●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이나 건축허가상 주택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지워진 주택부속의 토지를 말한다.

구역(海軍基地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 중 제한보호구역 안의 임야와 軍用電氣通信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안의 임야로서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는 임야
(94. 12. 31 改正)

(舊令) 5. 都市計劃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 및 軍事施設保護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海軍基地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 중 제한보호구역 안의 임야로서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는 임야(93. 12. 31 改正)

(舊令) 5. 都市計劃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 안의 임야로서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는 임야 (91. 5. 23 新設)

6. 水道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임야
(94. 12. 31 新設)

③ 法 第234條의 15 第2項 第5號에서 “골프장·별장·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土地”라 함은 다음 각號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第84條의 3 第1項 第1號의 2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안의 모든 토지

2. 第84條의 3 第1項 第1號의 규정에 의한 별장의 부속토지

3. 特別市·廣城市·(군지역을 제외한다) 市地城(邑·面地域을 제외한다) 안에 소재하는 1구의 주택(內務部令이 정하는 농가를 제외한다)에 부속된 토지(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도로 등 공용부분의 토지를 제외한다) 중 993제곱미터[特別市·廣城市(군지

第104條의 13【農家의 범위】 俊 第194條의 15 第3項 第3號에서 “內務部令으로 정하는 農家”라 함은, 2,97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고 실제로 영농을 하는 자가 그 영농을 위하여 1990년 5月 31일 이전부터 소유하는 주택을 말한다.

(90. 7. 26 新設)

【사례】 사업계획 승인을 얻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토지의 과세표준적용(대법원 94누 8686, 1995. 3. 17)

● 租稅法規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法文대로 解釋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地方稅法施行規則 제104조의 15 제5호는 分離課稅對象土地의 하나로 “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하여

★ 編者註 : 第234條의 15 第2項

6. 第3號 내지 第5號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綜合土地稅를 分離課稅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 (94. 12. 22 改正)

(舊法)6. 第3號 내지 第5號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원풀한 토지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중 綜合土地稅를 分離課稅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 (89. 6. 16 新設)

역을 제외한다)는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 이 경우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된 토지로 본다. (95. 8. 21 改正)

(舊令)3. 特別市·直轄市·市地域(邑·面地域을 제외한다) 안에 소재하는 1구의 주택(內務部令이 정하는 농가를 제외한다)에 부속된 토지(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도로 등 공용부분의 토지를 제외한다) 중 993제곱미터(特別市·直轄市는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 이 경우 그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된 토지로 본다. (90. 6. 29 改正)(94. 12. 31 改正)

4. 기타 内務部令으로 정하는 토지

④ 法 第234條의 15 第2項 第6號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土地”라 함은 다음 각號에 정하는 토지(法 第234條의 15 第2項 第5號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第1號 및 第2號의 경우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3. 12. 31 改正)

(舊令)④ 法 第234條의 15 第2項 第6號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土地”라 함은 다음 각號에 정하는 토지(法 第234條의 15 第2項 第5號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第1號 및 第2號의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住宅建設事業者登錄을 한 住宅建設事業者が 같은 법에 의한 事業計劃의 承認을 얻어 소유하고 있는 土地로서 承認을 얻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土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課稅年度 課稅基準日 현재 事業計劃의 承認을 얻지 못한 土地는 分離課稅對象土地에 해당하지 않고, 綜合土地稅는 보유하는 土地에 稅率을 인정하여 課稅하는 収益稅의 성격을 지닌 財產稅로서 당해 土地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獨立적으로 紳稅義務가 발생하고, 따라서 課稅標準도 매년 獨立적으로 課稅基準日 현재의 土地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課稅基準日 현재 事業計劃의 承認을 얻지 못한 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위 규정 소정의 分離課稅對象土地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第104條의 14【奢侈性財產으로 사용되는 土地의 범위】令 第194條의 15 第3項 第4號에서 “기타 内務部令으로 정하는 土地”라 함은 第46條의 2에서 정하는 高級娛樂場用 建築物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第104條의 15 刪除 (94. 12. 31)

★ 編者註 : 令으로 이관

(舊則)第104條의 15【分離課稅 對象土地】令 第194條의 15 第4項 第3號에서 “內務部令으로 정하는 土地”라 함은 다음 각號에 정하는 土地를 말한다.

1. 韓國水資源公社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水資源公社가 종전의 產業基地開發公社로부터 산업 기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을 승계함에

都市再開發法

第8條【土地등의 所有者의 施行】 ① 再開發事業은 再開發事業區域안의 土地 또는 建築物의 所有者(이하 “土地등의 所有者”라 한다)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再開發組合(이하 “組合”이라 한다)이 이를 施行한다.

② 土地등의 所有者 또는 組合은 建設業法에 의하여 免許를 받은 建設業者 또는 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하여 登錄한 住宅建設事業者와 規約 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으로 再開發事業을 施行할 수 있다.

第9條【地方自治團體등의 施行】 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8조의 規定에 불구하고 직접 再開發事業을 施行하거나 大韓住宅公社·韓國土地公社(都心再開發事業에 한한다) 또는 地方公企業法 제49조의 規定에 의하여 再開發事業의 施行을 事業種目으로 하여 설립된 地方公社(이하 이들 公社를 합하여 “公社”라 한다)중에서 施行者를 지정하여 再開發事業을 施行하게 할 수 있다.

1. 天災·地變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再開發事業을 施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土地등의 所有者 또는 組合이 第4條 第4項 및 第6項의 規定에 의한 再開發區域指定告示가 있은 날부터 1年 6月(住宅再開發事業의 경우에는 第4條 第3項 第5號의 事業施行豫定期限가 경과되기 전 1년을 말한다)이내에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施行認可를 申請하지 아니하거나 施行認可를 申請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

1. 韓國土地公社法에 의하여 설립된 韓國土地公社가 同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96. 2. 15 改正)

2. 大韓住宅公社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同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주택이나 대지를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土地(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3. 課稅基準日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鹽管理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염전을 폐지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96. 12. 31 改正)

(舊令)3. 課稅基準日 현재 계속 鹽田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염관리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염전을 폐지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95. 12. 30 改正)

(舊令)3. 課稅基準日 현재 계속 鹽田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91. 5. 23 新設)

(舊令)3. 法第234條의 15 第2項 第3號 내지 第5號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원활한 토지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중 綜合土地稅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內務部令으로 정하는 토지

4. 韓國水資源公社法에 의하여 설립된 韓國水資源公社가 同法 第9條 第1項 第5號에서 規定한 토지 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土地 (94. 12. 31 新設)

5. 電氣事業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가 電源開發에 관한 特別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

따라 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당해 사업을 승계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용지조성 사업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2. 電氣事業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가 電源開發에 관한 特例法에 의하여 動力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토지 중 발전소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電源開發에 관한 特例法의 시행전에 취득한 土地로서 담장·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안의 발전소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

3. 鎳業法에 의하여 鎳業權이 설정된 광구내의 토지로서 動力資源部長官으로부터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

4. 公有水面埋立法에 의하여 매립 또는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락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락일 또는 허가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93. 12. 31 改正)

5. 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住宅建設促進法 第44條의 규정에 의한 住宅組合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都市再開發法 第9條 내지 第11條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同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90. 7. 26 新設)

6. 韓國石油開發公社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

- 정될 때
3.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施行하는 都市計劃이나 公共施設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施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第50條의 規定에 의하여 再開發事業의 施行認可가 取消된 때
 5. 循環再開發方式에 의하여 再開發事業을 施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6. 당해 再開發區域안의 國·公有地面積이 전체 土地面積의 2分의 1이상일 때
 7. 당해 再開發區域안의 土地面積의 2分의 1이상의 土地所有者와 土地所有者 總數 및 建築物所有者 總數의 각 2分의 1이상이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나 公社의 事業施行을 요청할 때
 8.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될 때
②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직접 再開發事業을 施行하거나 公社를 施行者로 지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官報 또는 公報에 告示하여야 한다.
③ 第1項 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 循環再開發方式으로 再開發事業을 施行하는 경우에는 住宅建設促進法 第3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循環用住宅을 第2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臨時收容施設로 사용하거나 貸賃할 수 있다. 다만, 入住者가 再開發事業이 완료된 후에도 循環用住宅에 계속 居住하기를 희망할 때에는 이를 分讓하거나 계속 貸賃할 수 있으며, 이 경우 循環用住宅은 第34條의 管理處分計劃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본다.
④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土地등의 所有者 또는 組合의 事業현황 기타 사정에 의하여 사업의

개발에 관한 特別法의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철조망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

(94. 12. 31 新設)(96. 12. 31 직제 改正)

6. 鐵業法에 의하여 鐵業權이 설정된 광구내의 토지로서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土地

(94. 12. 31 新設)(96. 12. 31 직제 改正)

7. 公有水面埋立法에 의하여 매립 또는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락일 또는 허가일)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土地

(94. 12. 31 新設)

8. 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住宅建設促進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都市再開發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까지 소유하고 있는 토지 (96. 12. 31 改正)

- 【舊令】8. 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住宅建設促進法 第44條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재개발법 第10條 내지 第12條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를 포함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가 同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유개발공사가 정부의 석유류비축계획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기 위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와 石油事業法 第16條의 2의 규정에 의한 비축의 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 및 送油管事業法 第5條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송유관사업자의 석유저장·비축시설용토지

(90. 12. 31 新設)

7. 韓國가스公社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제조한 가스의 공급을 위한 공급설비에 직접 사용하는 있는 토지 (91. 12. 31 新設)
8.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국방상의 목적 이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등을 제한하는 공장구내의 토지

(93. 12. 31 新設)

住宅建設促進法

第44條【住宅組合의 設立등】 ① 組合을 구성하여 그構成員의 住宅을 建設하고자 할 때에는 管轄市長 등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認可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住宅組合을 解散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住宅組合의 設立方法·設立節次 및 住宅組合構成員의 資格基準과 住宅組合의 운영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第1項의 住宅組合 또는 勤勞者를 屑屬하는 者(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을 포함하며, 이하

계속수행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第50條의 规定에 의한 監督處分으로서는 事業目的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접 再開發事業을 代行하거나 公社로 하여금 再開發事業을 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⑤ 第4項의 规定에 의한 事業代行者는 施行者에 대하여 가지는 報酬請求權·費用償還請求權으로써 施行者에게 귀속될 基地 또는 建築施設을 押留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抵當權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⑥ 第4項의 规定에 의한 事業代行開始의 決定 및 효과, 事業代行者的 職務執行, 事業代行完了와 告示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條【第3開發者의 施行】 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第8條 및 第9條의 规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者를 第3開發者로 지정하여 再開發事業을 施行하게 할 수 있다.

1. 第4條 第4項의 规定에 의한 再開發區域指定告示가 있는 날부터 1年 6月(住宅再開發事業의 경우에는 第4條 第3項 第5項의 事業施行豫定期가 경과되기 전 1년을 말한다)이 경과한 후 30日이내에 第9條의 规定에 의하여 직접 施行하지 못하거나 施行者指定을 하지 못한 때
2. 天災·地變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再開發事業을 施行할 필요가 있거나 再開發事業의 施行을 지연시킴으로써 현저히 公益을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
- ② 第9條 第2項의 规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로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土地 (94. 12. 31 新設) (96. 6. 29 改正)

9. 韓國石油開發公社法에 의하여 설립된 韓國石油開發公社가 정부의 석유류비축계획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기 위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와 석유사업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 및 송유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송유관사업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97. 10. 1 改正)

【舊令】9. 韓國石油開發公社法에 의하여 설립된 韓國石油開發公社가 정부의 석유류비축계획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기 위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와 石油事業法 第16條의 2의 규정에 의한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 및 送油管事業法 第5條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송유관사업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土地 (94. 12. 31 新設)

10. 韓國가스公社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제조한 가스의 공급을 위한 공급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土地 (94. 12. 31 新設)

11. 集團에너지事業法에 의하여 설립된 韓國地域暖房公社가 열생산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土地 (94. 12. 31 新設)

1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국방상의 목적 이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등을 제한하는 공장구내의 土地 (94. 12. 31 新設)

13. 農業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 및 엽연초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관세

“雇傭者”라 한다)가 그構成員 또는 勤勞者の 住宅을建設하는 경우에는建設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登錄業者와 共同으로 事業을 施行하여야 한다. 이 경우 住宅組合 또는 雇傭者와 登錄業者를共同事業主體로 본다.

④ 國民住宅을 供給받기 위하여 住宅組合을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관할 市長등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⑤ 第4項의 住宅組合設立의 要件 및 節次등에 관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⑥ 第4項의 住宅組合에 대하여는 國民住宅을優先供給할 수 있다.

⑦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市長등은 住宅供給에 관한 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電算網普及擴張과 利用促進에 관한 法律의 规定에 따라 國家가 관리하고 있는 行政電算網등을 이용하여 住宅組合構成員의 資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⑧ 市長등은 住宅組合 또는 住宅組合의構成員이 이法 또는 이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住宅組合의 設立認可를 取消할 수 있다.

⑨ 市長등은 再建築組合이 老朽·不良한 住宅을 撤去하고 그 撤去한 住地위에 住宅을 再建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老朽·不良住宅에 대한 安全診斷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安全診斷의 대상·기준·實施機關·手數料 기타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準用한다.

第11條【再開發區域指定의 失效】① 第4條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開發區域指定告示가 있은 날부터 2年(住宅再開發事業의 경우에는 第4條 第3項 第5號의 事業施行豫定時期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내에 第22條 第23條 및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認可(이하 "事業施行認可"라 한다)의 申請(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직접 再開發事業을 施行하는 경우에는 施行規程 및 事業施行計劃의 작성을 맡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再開發區域指定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

②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開發區域指定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官報 또는 公報에 告示하여야 한다.

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토지 (97. 10. 1 改正)

【舊令】13. 農業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96. 12. 31 改正)

【舊令】13. 農業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95. 12. 30 新設)

14.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95. 12. 30 新設)

1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동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95. 12. 30 新設)

16.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자가 동법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95. 12. 30 新設)

17.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가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97. 10. 1 新設)

18.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p>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97. 10. 1 新設)</p> <p>⑤ 第1項 第2號라목 및 바목과 제2항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고,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목장용지중 도시계획구역안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목에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 (97. 10. 1 改正)</p> <p>(舊令)⑤ 第1項 第2號라목 내지 바목과 第2項 第4號 및 第6號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고, 第2項 第5號 각목에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 (96. 4. 27 改正)</p> <p>(舊令)⑥ 第1項 第2號(4) 내지(6)과 第2項 第4號 및 第6號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94. 12. 31 改正)</p> <p>(舊令)⑤ 第1項 第2號(4) 내지(6)과 第2項 第4號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90. 6. 29 新設)</p> <p>第194條의 16【課稅標準額】① 法 第234條의</p>
--	---

★ 編者註：第234條의 15

② 農漁村整備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어촌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있는 時價標準額(第111條 第2項 第2號의 规定에 의한 時價標準額을 말한다) 100만원 미만의 住居用 建築物로서 課稅基準日 현재 6月 이상 비워둔 住居用 建築物에 대하여는 財產稅를 免除한다. (97. 8. 30 改正)

★ 98. 1. 1 시행

(舊法)② 농촌지역(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촌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있는 時價標準額(第111條 第2項 第2號의 规定에 의한 時價標準額을 말한다) 100만원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課稅基準日 현재 6월 이상 비워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財產稅를 면제한다. (95. 12. 6 改正)

(舊法)② 농촌지역(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촌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있는 課稅時價標準額 100만원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課稅基準日 현재 6월 이상 비워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財產稅를 면제한다.

第266條【農水產物流通施設 등에 대한 減免】

① 農水產物流通公社法에 의하여 설립된 農水產物流通公社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농수산물유통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課稅基準日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財產稅 및 綜合土地稅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取

農魚村整備法

第2條【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라 함은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 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農魚村發展特別措置法

第2條【定義】

4. “농어촌”이라 함은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農魚村發展特別措置法施行令

第4條【農漁村의範圍】

법 제2조 제4호에서 “시의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 중 농림수산부장관이 농어촌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어촌발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촌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95. 6. 23 改正)

第221條【農水產物 流通施設 등】法 第266條第1項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農水產物 流通施設 및 教育訓練施設”이라 함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농수산물 종합직판장시설
2. 화훼유통센타 시설
3. 농수산물 유통교육훈련시설

得稅와 登錄稅를 追徵한다.
 ② 農漁村振興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에 의하여
 설립된 農漁村振興公社가 同法 第13條·第16
 條·第21條 및 第41條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소유하는 土地 및 建築物과 農地法에 의하여 취득·
 하는 農地 및 農漁村整備法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農業生產基盤整備計劃에 따라 취
 득·所有하는 農業基盤施設用土地와 그 施設物에
 대하여는 取得稅·登錄稅·財產稅 및 綜合土地稅
 를 免除한다. (97. 8. 30 改正)

★ 98. 1. 1 시행

(舊法) ② 農漁村振興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에
 의하여 설립된 農漁村振興公社가 同法 第13條·
 第16條·第21條 및 第41條의 규정에 의하여 취
 득·소유하는 土地 및 建築物과 農地法에 의하여
 취득하는 農地 및 農漁村整備法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農業生產基盤整備計劃에 따라
 취득·所有하는 農業基盤施設物 및 그 부속토지
 에 대하여는 取得稅·登錄稅·財產稅 및 綜合土
 地稅를 면제한다. (95. 12. 6 改正)

(舊法) ② 農漁村振興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에
 의하여 설립된 農漁村振興公社가 同法 第13條·
 第16條·第21條 및 第41條의 규정에 의하여 취
 득·소유하는 土地 및 建築物과 國家 또는 地方自
 治團體의 農地改良事業計劃에 의하여 취득·소유
 하는 農地개량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取得稅·登錄稅·財產稅 및 綜合土地稅를 면제한
 다.

③ 農業協同組合中央會·水產業協同組合中央
 會·畜產業協同組合中央會·林業協同組合中央會

【사례】 수산업협동조합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
 한 부동산의 비과세 여부 (세정 22670-10872.)

및 人蔴協同組合中央會가 구판사업 등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不動產(農水產物流通 및 價格安定에 관한 法律 第57條의 5의 規定에 의한流通子會社에게 農水產物流通施設로 사용하게 하는 不動產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의 100분의 50을 輕減하고, 課稅基準日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不動產에 대하여는 財產稅 및 綜合土地稅의 100분의 50을 輕減한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條例로 그 경감율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증비]

(97. 8. 30 改正)

★ 98. 1. 1 시행

(舊法)③ 農業協同組合中央會·水產業協同組合中央會·畜產業協同組合中央會 및 林業協同組合中央會가 구판사업 등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課稅基準日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財產稅·綜合土地稅 및 事業所稅(財產割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그 輕減率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取得稅와 登錄稅를 追徵한다. [증비]

(95. 12. 6 改正)

1986. 10. 8)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낸부로 매각하였다면,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p>第3款 賦課徵收</p> <p>第234條의 17【課稅基準日 및 納期】綜合土地稅의 課稅基準日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納期는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p> <p>第234條의 18【賦課徵收方法 등】① 綜合土地稅는 第234條의 16 第1項 및 第2項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綜合合算稅額 및 別途合算稅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안분 계산한 금액을 각 市·郡이 徵收할 稅額으로 하여 관할 市長·郡守가 普通徵收方法에 의하여 賦課徵收한다. ② 分離課稅對象土地에 대한 綜合土地稅는 第234條의 16 第3項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市長·郡守가 직접 稅額을 산정하여 普通徵收方法에 의하여 賦課徵收한다. ③ 綜合土地稅 課稅對象 토지가액의 합산·稅額 산정 기타 賦課절차와 徵收방법 등에 관하여는 內務部令으로 정한다.</p>	<p>第194條의 18【稅額按分 方法】法 第234條의 18 第1項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안분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法 第234條의 16 第1項 및 第2項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綜合合算稅額 또는 別途合算稅額에 당해 市·郡에 소재하는 과세대상토지(당해 納稅義務者가 소유하는 토지를 말한다)의 時價標準額을 곱한 금액을 당해 納稅義務者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과세대상토지의 時價標準額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納稅義務者에게 종합합산세액 및 별도합산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안분 계산한다. (95. 12. 30 改正)</p>	<p>第104條의 16【綜合土地稅 合算 및 賦課節次 등】法 第234條의 18의 규정에 의한 綜合土地稅의 과세대상토지의 조사 및 합산·세액산정 기타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號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課稅對象土地의 조사 및 합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市長·郡守는 法 第234條의 21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신고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로 과세대상토지를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2) 市長·郡守는 第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토지에 대하여 法 第234條의 22의 규정에 의한 공람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등의 절차를 거쳐 綜合土地稅의 課稅對象土地로 확정하고 이를 非課稅·減免對象土地 자료와 함께 道知事에게 매년 7월 15일까지 송부하여야 하며, 道知事은 이를 전산처리하여 그 자료를 매년 8월 20일까지 內務部長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內務部長官은 第2항의 규정에 의하여 道知事로부터 송부받은 전산자료에 의하여 納稅義務者별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등으로 구분하여 納稅義務者
---	---	---

第234條의 19【稅額調整】市長·郡守는 課稅對象土地의 누락으로 인한 수시부과사유의 발생, 위법 또는 착오로 인한 賦課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賦課한 綜合土地稅額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内務部令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稅額을 조정하여야 한다.

第234條의 20【少額不徵收】綜合土地稅是 徵

別로 토지의 필지수·면적·과세표준액 등을 합산 처리한다.

2. 稅額算定

內務部長官은 第1號 第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한 課稅標準額에 대하여 法 第234條의 16 第1項 및 第2項의 稅率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稅額을 法 第234條의 18 및 令 第194條의 18의 규정에 의하여 市·郡별로 稅額을 안분한 전산자료를 道知事에게 송부하고, 道知事은 内務部長官으로부터 송부받은 전산자료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전산처리한 후 납기개시 10일전까지 市長·郡守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賦課徵收

市長·郡守는 第2號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처리된 과세자료를 송부받아 이를 기초로 지체없이 징수결정을 한 후 납기개시 5일전까지 納稅義務者에게 別紙 제103호의 2 서식의 納稅告知書를 발부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納稅告知書·수납부·내역서 등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자료는 道知事が 작성할 수 있다.

(95. 4. 28 改正)

第104條의 17【稅額調整 節次】① 市長·郡守는 法 第234條의 19의 규정에 의한 세액조정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하거나 과세대상토지에 추가하여야 할 토지의 소유자·지번·지목·면적·과세표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의 전산자료를 지체없이 道知事を 거쳐 内務部長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内務部長官은 第1項의 규정에 의한 세액조정

第3章 市·都稅 第7節 綜合土地稅 第234條의 21

收稅額이 告知書 1매 당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綜合土地稅를 徵收하지 아니한다.

【註】 234의 20-1 「소액불징수」

법 제234조의 20에 규정하고 있는 「고지서 1매당 1,000원 미만」 이라함은 종합토지세 고지서상에 명기고지된 세액을 제외한 종합토지세만을 指稱하며, 세액조정으로 인하여 過去로 부과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第234條의 21【申告義務】 ① 토지소유자는 土地所有權 또는 課稅對象土地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課稅基準日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市長·郡守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第234條의 9 第2項 第2號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가 課稅基準日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市長·郡守에게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종중토지로서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부상의 소유자가 課稅基準日로부터 10일 이내에 종중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市長·郡守에게 종중토지임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內務部令으로 정한다.

⑤ 第1項 내지 第3項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市長·郡守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課稅臺帳에

자료를 받은 때에는 당해 納稅義務者에 대한 綜合土地稅額을 다시 조정하여 道知事를 거쳐 해당 市長·郡守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市長·郡守는 第2項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이미 과세한 綜合土地稅에 대한 경정 또는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第104條의 18【綜合土地稅 納稅義務者 申告 등】 ① 토지의 소유자가 法 第234條의 21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의 변동 등으로 인한 納稅義務者の 변동신고 또는 과세대상토지의 변동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別紙 第104號書式에 의하되, 納稅義務者 또는 課稅對象土地의 변동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法 第234條의 9 第2項 第2號 및 第3號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 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法 第234條의 21 第2項 및 第3項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別紙 第104號書式에 의하되, 사실상 所有者와 公簿上의 所有者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市長·郡守는 法 第234條의 21 第5項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토지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綜合土地稅課稅臺帳에 등재한 때에는 別紙 第105號書式에 의한 종합토지세과세대장 직권등재 통지서에 의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者에게 통지하고, 綜合土地稅課稅臺帳 상부 여백에 신고에 의한 등재와 구별할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이 1회적인지 또는 장기적인지나 반복적인 것인지, 대가의 다음과 혹은 대가의 算出方式 여하를 묻지 아니한다.

第234條의 12【用途區分에 의한 非課稅】 다음各號에 규정하는 토지(第112條 第2項의 규정에 의한 課稅對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綜合土地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1. 12. 14 改正)

(舊法)第234條의 12【用途區分에 의한 非課稅】 다음各號에 규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綜合土地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의 그 토지와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9. 6. 16 新設)

1. 削除 (94. 12. 22)
 - (舊法) 1. 國·道·市·郡·地方自治團體組合이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
 2. 祭祀·宗教·慈善·學術·技藝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行政機關의 建築規制措置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94. 12. 22 改正)

第194條의 6【收益事業 및 非營利事業者의 범위】 ① 法 第234條의 12 本文但書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收益事業”이라 함은 第78條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91. 12. 31 改正)

【사례】 제사등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대법원 92누 4499. 1992. 11. 10)

●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제사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제사등의 시설 또는 부지로서 현실적으로 제사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분묘기지 및 금양립이나 위토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위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제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볼 수 없다.

★ 編者註 : 第234조의 11 제2항으로 이관

② 法 第234條의 12 第2號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非營利事業者”라 함은 第79條의 규정에 의한 非營利事業者를 말한다. (91. 12. 31 新設)

【사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작업 중인 토지 (대법원 92누 14809. 1993. 6. 8)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건축중”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거나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뜻하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축허가신청의 전단계로서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하여 심의 중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에 직접 사용될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거나 건축물을 건축중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 허가권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건축계획 심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여 왔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사례】 비영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익용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여부 (세정 13407-943. 1994. 11. 17)

● 학교경영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영하는 수익용 재산은 교육에 직접 공하고 있는 재산(교사·교지·실습장·운동장 등)으로 볼 수

第3章 市·都稅 第7節 綜合土地稅 第234條의 12

<p>■ 234의 12-1 「建築中」 법 제234조와 12 제2호의 「건축중」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말한다.</p> <p>■ 234의 12-2 「祭祀등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법 제234조와 12 제2호의 「제사등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제사에 사용하는 제설등의 시설이 위치한 地로서 현실적으로 제사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墳墓土地 및 禮賛林이나 위토로 사용하는 사유만으로는 제사등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볼수 없다.</p> <p>■ 234의 12-3 「학술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학교 경영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영하는 수익용 재산은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校舍, 교지, 운동장등)으로 볼수 없으므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p> <p>[舊法] 2. 祭祀·宗教·慈善·學術·技藝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때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89. 6. 16 新設)</p> <p>3. 大統領令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소유 토지 (91. 12. 14改正)</p> <p>[舊法] 3.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소유 토지 (89. 6. 16 新設)</p> <p>4. 削除 (94. 12. 22)</p> <p>[舊法] 4. 教育法에 의하여 인가된 產業體附設中·高等學校의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다만, 당해 토지를 나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5. 別定郵遞局이 公用 또는 公公用으로 사용하는</p>	<p>없으므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은</p> <p>③ 法 第234條의 12 第3號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마을회 등”이라 함은 第78條의 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 등을 말한다. (91. 12. 31 新設)</p> <p>(舊令)第194條의 6【非營利事業者의 범위】 法 第234條의 12 第2號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非營利事業者”라 함은 第79條의 규정에 의한 非營利事業者를 말한다.</p>
---	--

토지

【通知】 234의 12-4 「別定郵遞局」

법 제234조의 12 제2호의 '별정우체국'이라 함은 별정우체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별정우체국으로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칭사 기타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자기 계산하에 운영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6.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溝渠·溜池·사적지 및 묘지

第194條의 7【非課稅 對象土地의 범위】法 第234條의 12 第6號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溝渠·溜池·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號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道路

道路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私道. 다만, 건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를 제외한다. (96. 12. 31 但書新設)

2. 河川

하천법에 의한 하천(준용하천을 포함한다)
(97. 10. 1 개정)

(舊令) 2. 河川

地籍法에 의한 하천

3. 堤防

地籍法에 의한 堤防 중 특정인의 專用에 공하는 제방 외의 제방

4. 溝渠

농업용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공하는 구거

5. 溜池

농업용 및 발전용에 공하는 댐 저수지 소류지와

【사례】 "사도"의 정의 (대법원 94누 15547. 1995. 7. 28)

● 영 제194조의 7 제1호에서 "...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반드시 사도법 제4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 당해 사도의 이용 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재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원 미만인 때에는 財產稅를 徵收하지 아니한다.
(90. 12. 31 新設)

第192條【申告義務】① 財產稅의 納稅義務者는
條例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納稅義務者가 第1項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
지 아니할 경우에는 市長·郡守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재산의 소유자를 納稅義務者로
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78. 12. 6 改正)

第143條【課稅臺帳에의 登載通知】市長·郡守
가 法 第192條 第2項의 규정에 의하여 無申告財
產을 課稅臺帳에 등재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관계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79條【申告】法 第192條의 규정에 의한 신
고는 別紙 第50號書式을 준용한 申告書에 의한
다.
(79. 3. 21 改正)

第82條【財產稅 課稅臺帳에의 職權登載】① 市
長·郡守는 令 第143條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
로 財產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財產稅 課稅臺
帳에 등재한 때에는 別紙 第73號書式에 의한 財
產稅 課稅臺帳職權登載通知書에 의하여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통지하고, 대장용지 상
부 여백에 別紙 第74號書式에 의한 표시를 하여
신고에 의한 등재와 구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79. 3. 21 改正)

② 第1項의 규정에 의한 직권등재의 통지방법은
法 第51條와 法 第52條의 규정에 의한다.

第193條【賣却·登記·登錄關係書類의 閱覽
等】稅務公務員이 財產稅의 賦課·徵收에 관하여
財產稅 課稅對象財產의 매각·등기·등록 기타
재산현황에 대한 관계서류를 閱覽하거나 謄寫할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73. 3. 12 改正)

第194條 削除
(63. 12. 14)

第195條 削除
(94. 12. 22)
(舊法)第195條【減免】市長·郡守는 천재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財產稅의 減免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市·郡의회의 의결

第144條 削除
(94. 12. 31)
(舊令)第144條【特殊事情의 意義】法 第195條에
서 规定한 “天災 기타 特殊한 사정이 있는 경우”
라 함은 第87條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말한다.

<p>7. 보안림 기타 공익상 綜合土地稅를 賦課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토지</p> <p>【註】 234의 12-5 「保安林」 법 제234조의 12 제7호의 「보안림」이란 산림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안림을 말한다.</p>	<p>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 6. 史蹟地 文化財保護法에 의하여 史蹟地로 지정된 토지. 다만, 소유자가 사용수익하는 토지를 제외한다.</p> <p>7. 墓地 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94. 12. 31 改正)</p>	<p>第194條의 8【用途區分에 의한 非課稅】法 第234條의 12 第7號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土地”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p> <p>1. 寺刹林·洞有林 2. 軍事施設保護法에 의한 軍事施設保護區域(海軍基地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전·답·과수원 및 대지를 제외한 토지. (93. 12. 31 改正) (舊令)2. 軍事施設保護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전·답·과수원 및 대지를 제외한 토지 (91. 5. 23 改正) 3. 削除 (91. 5. 23) (舊令)3.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 4. 山林法에 의하여 지정된 天然保護林·保安林·採種林·試驗林 5. 自然公園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 안의 임야 6.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95. 12. 30 新設) (舊令)6. 削除 (94. 12. 31)</p>	<p>傳統寺刹保存法</p> <p>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각호와 같다.</p>
---	--	---	--

第3章 市·郡稅 第7節 綜合土地稅 第234條의 21

收賈 稅額이 告知書 1매 당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綜合土地稅를 徵收하지 아니한다.

【註記】 234의 20-1 「소액불징수」

법 제234조의 20에 규정하고 있는 「고지서 1매당 1,000원미만」이라함은 종합토지세 고지서상에 병기고지된 세액을 제외한 종합토지세만을 指稱하여, 세액조정으로 인하여 追加로 부과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第234條의 21【申告義務】 ① 토지소유자는 土地所有權 또는 課稅對象土地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課稅基準日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市長·郡守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第234條의 9 第2項 第2號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가 課稅基準日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市長·郡守에게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종중토지로서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부상의 소유자가 課稅基準日로부터 10일이내에 종중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市長·郡守에게 종중토지임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內務部令으로 정한다.

⑤ 第1項 내지 第3項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市長·郡守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課稅臺帳에

자료를 받은 때에는 당해 納稅義務者에 대한 綜合土地稅額을 다시 조정하여 道知事を 거쳐 해당 市長·郡守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市長·郡守는 第2項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이미 과세한 綜合土地稅에 대한 경정 또는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第104條의 18【綜合土地稅 納稅義務者 申告 등】 ① 토지의 소유자가 法 第234條의 21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의 변동 등으로 인한 納稅義務者の 변동신고 또는 과세대상토지의 변동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別紙 第104號書式에 의하여, 納稅義務者 또는 課稅對象土地의 변동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法 第234條의 9 第2項 第2號 및 第3號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 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法 第234條의 21 第2項 및 第3項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別紙 第104號書式에 의하여, 사실상 所有者와 公簿上의 所有者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市長·郡守는 法 第234條의 21 第5項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토지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綜合土地稅課稅臺帳에 등재한 때에는 別紙 第105號書式에 의한 종합토지세과세대장 직권등재통지서에 의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로 인정되는者에게 통지하고, 綜合土地稅課稅臺帳 상부 여백에 신고에 의한 등재와 구별할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등재할 수 있다.

⑥ 信託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토
지의 수탁자는 課稅基準日부터 10일 이내에 수탁
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당해토지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市長·郡守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93. 12. 27 新設)

第234條의 22【供覽 및 異議申請】① 市長·郡
守는 관할구역 안의 綜合土地稅 課稅對象 土地를
조사하여 매년 課稅基準日로부터 15일간의 기간
을 정하여 이를 공람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한 綜合土地稅 課
稅對象土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불복의 사
유를 갖추어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市長·郡守에
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市
長·郡守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에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第234條의 23【賣却·登記·登錄關係書類의
閱覽 등】稅務公務員이 綜合土地稅의 賦課·徵收
에 관하여 綜合土地稅 課稅對象土地의 매각·등
기·등록 기타 토지현황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동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234條의 24 削除
〔舊法〕第234條의 24【減免】市長·郡守는 천재

한다.

第104條의 19【異議申請】① 法 第234條의
22 第2項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別紙 第106
號書式에 의한다.

② 法 第234條의 22 第3項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는 別紙 第107號書式에 의
한다.

第4章 目的稅 第3節 事業所稅 第244條

(舊法) 1. 財產割

남기개시일 현재 事業所 課稅臺帳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第2次 納稅義務를 지울 수 있다. (76. 12. 31 新設)

2. 從業員割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24)

- 아파트 관리사업소의 관리사업소장 이하 직원들이 아파트 관리용역회사의 종업원이고 그 관리사업소는 관리용역회사가 아파트 관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고, 직원들의 급여가 궁극적으로 관리용역회사에 의하여 지급된다면 관리용역회사는 관리사무소의 사업주로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이다.

第206條【建築物所有者의 第2次納稅義務】 ① 法 第244條 第1號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財產割의 第2次納稅義務를 지울 수 있는 경우는 이미 賦課된 財產割을 사업주의 재산으로서 徵收하여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76. 12. 31 新設)

②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法 第245條의 규정에 의한 非課稅대상자인 경우에도 第2次納稅義務를 지울 수 있다. (76. 12. 31 新設)

③ 法 第19條의 规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76. 12. 31 新設)

第245條【國家등에 대한 非課稅】 ①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地方自治團體組合에 대하여는 事業所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94. 12. 22 改正)

② 駐韓外國政府機關·駐韓國際機構 및 外國援助團體에 대하여는 事業所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다만, 우리나라 정부기관 및 원조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課稅하는 외국의政府 또는 援助團體의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4. 12. 22 新設)

(舊法) 第245條【國 등에 대한 非課稅】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事業所稅를 賦課하지

<p>매월 말 현재 당해 월에 지급된 종업원의 급여총액</p> <p>第248條【稅率】① 事業所稅의 稅率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p> <p>(76. 12. 31 新設)</p> <p>1. 財產割 사업소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91. 12. 14 改正) (舊法) 1. 財產割 사업소연면적 3. 3제곱미터당 500원 (84. 12. 24 改正)</p> <p>2. 從業員割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② 市長·郡守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所稅의 税率를 第1項의 税率 이하로 정할 수 있다. (91. 12. 14 改正) (舊法) ② 市長·郡守가 당해연도분의 事業所稅의 세율을 第1項의 세율 이하로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道知事를 거쳐 内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8. 4. 6 新設)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排出하는 사업소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汚染物質排出事業所에 대하여는 第1項 第1號의 税率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91. 12. 14 新設)</p>	<p>(94. 12. 31 新設)</p> <p>第211條의 2【汚染物質排出事業所】法 第248條 第3項의 규정에 의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汚染物質排出事業所”라 함은 각호의 1에規定하는 사업소를 말한다. (94. 12. 31 改正)</p> <p>1. 水質環境保全法 第10條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사업소로서同法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업소 (94. 12. 31 新設)</p>
--	---

第249條【免稅點】 ①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從業員割을, 당해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財產割을 각각 稅課하지 아니한다.

(84. 12. 24 改正)

② 第1項의 규정에 의한 免稅點 적용기준은 大統領령으로 정한다.

(76. 12. 31 新設)

[註] 249-1 '免稅點':

법 제249조에서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라 함은 사업소 전체면적에서 순 제20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물' 면적을 减除한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第250條【徵收方法과 納期】 ① 事業所稅는 申告納付의 방법에 의하여 徵收한다.

(94. 12. 22 改正)

2. 水質環境保全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은 업소로서 당해 업소에 대한 점검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업소 (94. 12. 31 新設) (舊令)第211條의 2【汚染物質排出事業所】法 第248條 第3項의 규정에 의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라 함은 水質環境保全法 第10條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및 신고대상사업소를 말한다. 다만, 同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배출시설을 설치완료하고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로 보지 아니한다.

(91. 12. 31 新設)

第212條【免稅點의 適用基準】 法 第249條 第1項의 규정에 의한 면세점의 적용기준은 다음 各號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76. 12. 31 新設)

1. "종업원수 50인 이하"라 함은 第204條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의 수가 월 通常 50인 이하일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월 통상인원의 산정방법은 內務部令으로 정한다.
2.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라 함은 第202條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84. 12. 31 改正)

第213條【申告納付 등】 法 第250條의 규정에 의하여 事業所稅를 신고납부하는 자는 納付書에 건축물의 연면적·종업원수·급여총액·稅額·기

【사례】 세산부 사업소세의 면세점(내부부 세정 134-7-406, 1994. 7. 23)

- "330m²이하"란 반올림하지 않은 상태로서 정확히 330.00m²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330.57m²는 사업소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第111條【從業員割의 免稅點算出을 위한 月通常人員의 計算方法】 令 第212條 第1號의 규정에서 "月通常人員"이라 함은 월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수에, 수시 고용하는 종업원의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한다.

(77. 3. 26 新設)

第112條【申告納付】 申 第213條의 규정에 의하여 事業所稅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別紙 第49號書式에 의하여 別紙 第99號書式을 첨부하여야 한